기본연구과제 2002-08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 현황

오 석 민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이제 문화재는 하나의 산업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속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진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민속자원은 소위 '남도'의 민속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반대로 서울의 민속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발굴인 채 남아 있다는 점이 잠재력이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충청남도 민속자원의 발굴,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 민속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착실한 조사·연구의 축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별·분야별 연구를 축적하고, 나아가서 활용방안의 모색에 이른다면 충청남도의 문화적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향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축적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오석민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차 례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방법 ····· 4

제 2 장 문화재정책의 추이 ····· 6

제1절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 6

제2절 최근 문화재정책의 동향 ····· 10

제 3 장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 ····· 15

제1절 연도별 '민속문화재' 지정현황 ····· 15

제2절 지정 '민속문화재' 관리현황 ····· 25

제3절 지정 '민속문화재' 지원현황 ····· 35

제 4 장 문화재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 41

제1절 기초조사의 필요성 ····· 41

제2절 지정대상 다변화의 필요성 ····· 49

제3절 전수교육 활성화의 필요성 ····· 51

제4절 활용방안 다각화의 필요성 ····· 52

제5절 지역 문화재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 55

제 5 장 결 론 ····· 57

참 고 문 헌 ····· 60

부 록 ····· 61

<부록 1. 일본 문화재보호법 약사> ····· 61

<부록 2. 문화재청 발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중 관련 내용 요약> ····· 63

<부록 3.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의 연도별 현황> ····· 71

<부록 4.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연도별 보수현황> ····· 75

<부록 5. 은산별신제 전승관계자 변동현황> ····· 80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이제는 '문화의 세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문화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 분야가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문화산업이라는 통칭보다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개별 산업으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두되는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지역이 차별적인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면,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가공・포장할 수 있다면, 더욱 각광받는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전통문화자원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시대구분론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고, 유・무형문화재 등등 형태별 분류도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상 문화재의 분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형태별 분류에 가깝다. 다만 그 중요성이 높은 경우를 별도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통민속 관련 자원들도 문화재는 주로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민속자료가 다른 범주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가(古家)의 경우, 국가 지정 '사적'[아산맹씨행단], '중요민속자료'[아산건재고택], 도 지정 '유형문화재'[이남규선생고택], 도 지정 '기념물'[정순왕후생가] 등으로 되어 있다.

민속자원은, 특히 시대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 부모가 '자랑스럽게, 마치 전문가처럼' 자녀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것

이다. 그런 까닭에 다양한 민속 이벤트 행사가 종종 개최되고, 다양한 박물관 가운데 민속박물관은 거듭 방문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민속자원은 본래 과거 생활 자체였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친 자원들이 전해진다. 따라서 그 활용 범위도 넓고, 문화 컨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민속자료를 소위 '유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민속자료'가 한국을 대표하는 소위 '명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속이야말로, 기록되지 않은 역사이고, 삶의 전면을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자료이다. 정사(正史)의 이면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또한 생활의 전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다. 교과서를 통하여 접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부모 세대의 향수 어린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문화재적 가치'와는 별개로, 활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잠재력이 큰 자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통민속자원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1)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이 단절되면서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고,
2) 일부의 종목이 정부의 '전통 보존'이라는 기치 아래, 또는 문화운동패의 문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연행되고 있으며,
3) 그 과정 속에서 무분별한 각색과 가공이 가해지고, 때로는 과거에 없었던 민속을 날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풍습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그 변화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미처 충분치 않았던 점은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부의 간섭에 의하여 민속자원은 분야별 부침이 달랐다. 산업화의 추진과 함께 했던 소위 '미신타파운동', 이와는 반대로 추진되었던 민속경연대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문화패들의 참여 등에 따라 전통민속자원의 변화상이 달랐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분야별 편향성이었다. 각 주체들은 선택적으로 특정 종목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 종목에 대한 도식적 해석을 가하였고, 또한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속자원은 원래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되는 탈상황화가 발생하였고, 단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공연종목으로 변하였다. 이 또한 현 시대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사전에 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오로지 '전통의 고수'를 고집하는 보수적인 견해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문화재의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원형 상실'을 우려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위 '원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이며, 민속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은 단지 우연일 뿐이다. 오히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관련자들은 고집스럽게 원형보존을 강조하고 있고, 그 결과 시대적 상황에 뒤처지면서 새로이 전승을 담당할 청년층으로부터 전통문화가 외면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원형보존을 강조하는 문화재 담당자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을 발생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때로는 문화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래와는 다르게 과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한 추론에 의거하여 새로운 항목을 첨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지어는 '우리 시·군에만 무형문화재가 없을 수는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애향심으로 새로운 민속을 급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문화재 관련법의 제·개정 추이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속자원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전통민속자료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분석한 후에,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문화재 정책동향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였는데, 한국이 일본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민속자료의 연도별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그리고 제3절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고, 그에 따른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산시와 논산시의 사례를 통하여 미지정 민속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두 시·군의 경우, 필자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시 직접 참여하였던 관계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 다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철저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우선적인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종 문건이 되며, 그 외에 필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현지조사 자료 및 경험,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실시했던 현지조사 자료는 주로 충청남도에 대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통해서 확보했던 것들이다. 조사의 성격상 심층적인 면접이나 참여관찰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오

히려 좋은 기회였다.

또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축제를 참관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민속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 참관시에 관람객 등 참여자의 호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행정자료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문화재 관련 법안과 관련 보고서, 연도별 보수사업 현황, 문화재 지정보고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등의 문건을 확보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였다. 확보된 문건은 되도록 원 자료를 일차 가공한 상태로 전재하였는데, 이는 본 보고서가 이론적 논의에 못지 않게 정책적 제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2 장 문화재정책의 추이

제1절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한국의 문화재 정책은 일본을 거의 뒤따르고 있다.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나라에는 흔치 않은 문화재 보호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체계이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문화재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문화재 전반을 통괄하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이후, 주요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1년 12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93차 상임위원회 상정·결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令)을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① 자문기관으로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의 4종으로 구분하며, ③ 가지정 제도를 허용하는 등이었다.

제1·2차 개정은 1963년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관리특별회계제도를 창설하면서 구황실재산법(舊皇室財産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제5차 개정은 1970년에 상정·의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해외전시 등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문화재의 국외수출이나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정문화재 외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제도를 신설하였다.

---

1) 영국의 '도시전원계획법'은 경관보존, 프랑스의 '천연기념물 및 미술적, 역사적, 학술적, 전설적 혹은 회화적인 경관의 보호를 위한 1930년 5월 2일부 법률'은 경관의 보호를 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6차 개정은 1982년에 이루어졌다.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가치의 경중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4년에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제정되었다. (1984. 12. 14.) 주요 골자는 ① 건립·건조된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사찰·향교·서원·사우·정자 등 역사적 의의를 가진 건조물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② 특히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조물은 보존대상전통건조물로, 전통건조물의 밀집지역 등으로서 그 지역 전체를 특히,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각각 지정하며, ③ 보존대상전통건조물 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음 개정은 1999년 1월에 이루어졌다.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중요무형문화재 공개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 및 공개를 위한 출품에 대한 지원금과 (피해)보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강제하였다.[2)]

2001년 3월에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법안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의 개념, 그 대상은 물론이요, 지정 대상의 확대 과정도 그대로이다. 즉,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령의 명칭, 모든 문화

2) 이 조항은 2000년 1월에 보호구역을 포함한 외곽경계까지 확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으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재를 망라하는 통일적인 체계, 적용 대상을 유형문화재부터 시작하고 무형 → 매장 → 민속 등으로 분야를 확대시킨 과정도 유사하다. 문화재를 전담하는 기구, 즉 일본의 문화청, 그리고 한국의 문화재청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나아가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라는 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일본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1975년 '전통적 건조물군'을 신설했을 때, 한국 정부는 9년 후인 1984년에 소위 '민속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러한 추세는 더욱 빨라져서 일본에서 1997년 '근대화 유산' 및 '등록문화재'의 설치하였는데, 불과 4년만인 2001년 3월에 법을 개정하여 '근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한 결과 문화재 지정체계는 일본과 거의 흡사하게 되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한국의 경우 일본의 체계를 더욱 단순화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정문화재 유형상의 차이도 미미하다. 한국의 경우, ① 국보 아래 등급으로 보물이 있고, ② (중요)민속자료는 일본의 민속문화재에 대응하며, ③ 일본의 기념물은 한국의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을 하나로 묶은 것이고, ④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군에 해당하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 「문화재보호법」과는 별도로 입법하였다가 1999년 폐지되었으며, ⑤ 문화재 보존기술을 문화재로 규정한 점, 그리고 ⑥ 매장문화재를 별도로 구분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문화재 보존기술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문화재 당국이 문화재 보존처리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추측컨대,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를 강조하는 흐름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광범위한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또한 발굴조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향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표 1. 일본의 문화재 지정체계>

```
        ┌ 유형문화재 ┬ 지정[3]) 중요문화재 - [특히 가치가 높은 것] (지정) 국보
        |            └ (등록[4]) 등록유형문화재(단 건조물)
        ├ 무형문화재 ┬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 (선택[5])-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
문화재 ┼ 민속문화재 ┬ 유형의 민속문화재 - (지정) 중요유형민속문화재
        |            └ 무형의 민속문화재 ┬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                                └ (선택) [기록작성 등 조치] 무형의 민속문화재
        ├ 기념물- (지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 - [특히 중요] (지정)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 전통적 건조물군 ┬ (지정: 지방공공단체가 결정)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                 └ (선정[6])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 문화재의 보존기술 - (선정) 선정보존기술
        └ 매장문화재
```

<표 2. 한국의 문화재 지정체계>

3) 국가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을 국가가 지정하여 그 관리, 보호, 공개, 조사에 관해 필요한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문부대신 지정). 이러한 규제는 형사벌, 행정벌이 부과된다. 또한 국가지정 이외의 문화재로서 지방공공단체의 구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지정한다.

4) 문부대신이, 중요문화재 이외의 유형문화재로서 건조물 중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고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문화재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5) 문화청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거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의 민속문화재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6) 시정촌 등의 지방공공단체는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도시계획구역이외의 구역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를 정할 수가 있다. 문부대신은 시정촌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의 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로서, 일본국내에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을 중요건조물군보존지구로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문부대신은 그 자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인 기술 혹은 기능으로서 보존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보존기술로서 선정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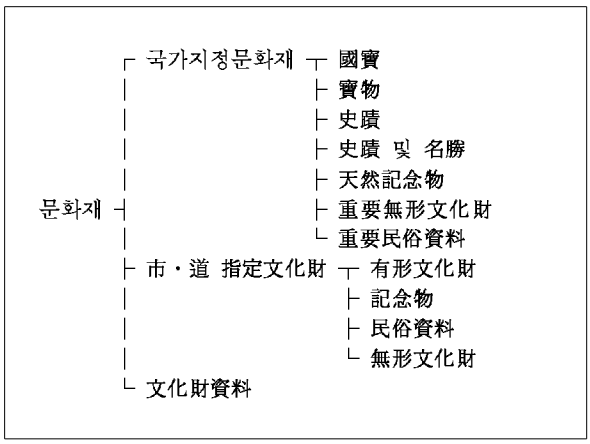

이처럼 일본의 문화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미래의 추이도 일본의 경험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 약사는 <부록 1. 일본 문화재보호법 약사> 참조)

제2절 최근 문화재 정책의 동향

현재까지도 문화재 분야는 국가 정책의 향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상황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화재 전담 행정기관의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문화재청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7]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적극적인 활용, 구체적으로는 문화산업의 소재로,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화재 활용을 강조한 점이다.

과거 문화재 활용면에서도 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

7)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년 8월).

러나 그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1992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궁중유물전시관 등 전시시설의 개관 5건, 국제간 교류 실적, 문화재 소개책자의 발간, 안내판의 교체·정비를 들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 핵심 6대 과제 가운데 세 번째로 효율적 활용을 들면서,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므로,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함'**을 밝히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광자원화 방안에서는 유교문화, 가야문화, 백제문화 등을 고품격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전통공예품을 응용한 관광상품화,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를 들고 있다.

또한 문화재 향유 기회의 확대 방안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역축제와의 연계, 자연문화재의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유적 체험 프로그램, 전시·교육 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존대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전통민속마을의 정비방안을 보면, 가옥의 보수·정비에 있어서 내부 공간의 현대적 시설 도입뿐만 아니라, 집단상가 조성, 민속관 건립,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홈 스테이(Home Stay)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원의 상품화'라 할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광호텔화 추진은 달라진 문화재청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재관리국 또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했던 문화재정책의 기본방향을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나타난다.

<표 3. 문화재 관리 기본방향 변화 추이>

1992년 기본방향	2002년 기본방향 (핵심 6대 과제)
①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창달의 기반조성 ② 유적정비 및 국민정신교육의 도장 조성 ③ 문화재관리능력 배양 ④ 문화재 보급선양과 신문화 창조	① 원형 보존 ② 체계적 관리 ③ 효율적 활용 ④ 과학적 조사연구 ⑤ 국제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⑥ 행정지원체계 강화

* 1992년 :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문화부, 1992)
* 2002년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년 8월)

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한 보수·정비 등을 위한 관리에서 산업으로서의 문화재를 바라보려는 시각의 변화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후반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양 및 위임의 부분이다. 이전부터 꾸준히 계획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여건이 미흡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계획서에도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문화재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이양 또는 위임될 것이다. 문화재 관계법은 일본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선례에 비추어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사실상 2002년의 문화재청 기본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사 연구활동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다. 2002~2011년간 50억원의 예산으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등에 이은 분야별 후속연구로, 민간신앙조사연구(2003~2005년), 의식주조사연구(2005~2007년), 언어전승조사연구(2007~2009년), 민속지도 제작 및 민속사전 편찬(2005~2011년)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고서는 대부분의 조사·연구가 국립민속박물관 등 중앙의 전문기관에게 발주되고, 지역 연구자는 개인적인 접촉에 의하여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가 이미 확인된 사례를 집대성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 차원의 기초 조사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기초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비로소 중앙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조사·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컨텐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초조사의 바탕 위에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화재 추가 지정, 나아가서 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도, 추가 조사와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2003~2007년에 걸친 '지역별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실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가치가 있는 종목 지정 추진' 사업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초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더욱이 아직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겠지만, 동 기간에 무형문화재 등에 관한 사안을 분리 입법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만일 성사된다면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주도하는 음향영상매체를 통한 자료의 디지털화의 주된 대상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통문화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후보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민속분야와 관련해서는 월성 양동마을, 강릉단오제, 옹기장, 처용무, 제주 칠머리당굿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그 후보로조차 거론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원의 발굴과 후속 연구, 그리고 교육·홍보에 등한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아산 외암마을, 은산별신제 등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지정 문화재, 그리고 미발굴 자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화재 전문인력양성의 경우, 모든 사업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해설가'의 양성과 같이 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일 뿐이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였을 때, 문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더욱이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소재하는 곳이라는 강점을 살려,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유념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2001년 3월 **'등록문화재' 제도의 신설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성
- ►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발굴**의 필요성
- ► 백제문화권을 이을 수 있는 **문화권 개발사업 발굴**의 필요성
- ► **전통공예품과 천연기념물의 관광상품화, 무형문화재의 지역축제와의 연**

계방안의 필요성

► 충청남도 유일의 민속마을인 **외암민속마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의 필요성

► **민간신앙·의식주·언어전승, 민속지도 및 민속사전 편찬 계획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지역별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자원의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

제 3 장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

제1절 연도별 '민속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 지정은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그 외에 1984년 이전 비지정문화재였던 대상들을 망라한 문화재 자료가 있다.

이 가운데 민속 관련 문화재는 주로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민속 관련 문화재가 두 범주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가(古家)의 경우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사적, 중요민속자료로, 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자료로도 다수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더라도, 두 범주의 문화재와 연관된 경우는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선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에 포함된 경우를 살펴보고, 동일한 성격의 문화재로서 다른 범주에 포함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옳은 순서가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속 관련 문화재 분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흔히 문화재 관리 또는 보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형태별 또는 재질별 분류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한 후에, 석조·목조·금속 등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건조물·동산·천연기념물·명승 등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문화재 자체의 현상 유지 및 보수, 특히 보존처리 등의 필요성이 가장 앞설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류는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대상의 형태나 재질 등에 못지 않게 분야별 접근이 중요할 수가 있다. 분야별 지정 현황을 통하여 현재 문화정책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문화재 선정 분야와 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어떠한 분야의 민속 관련 문화재들이 선정되었는지, 문화재로 지정된 범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재 지정에서 중요시된 측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에서 '천연'은 천연기념물, '출토 일괄'은 가전(家傳)되거나 묘역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을 가리킨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 외에,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로 분류된 문화재 가운데 민속 관련 문화재로는 고가와 일괄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자료 중에도 고가와 일괄 유물이 다수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목공예품, 족보[石譜], 바위 등이 있다.

한편 석불은 흔히 유형문화재 또는 석조문화재 등으로 분류되어 다룰 수 있으나, 주민들이 '미륵님'으로 모시는 민간신앙의 대상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논의의 진행상 참고자료로 포함시켰다. (천연)기념물로 등재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가전되거나 묘소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은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요)민속자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재자료를 포함, 충청남도 내에 지정된 민속 관련 문화재는 총 119건(국가지정 35건, 도지정 64건, 문화재자료 20건)이다. 그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사례는 74건으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문화재자료를 제외했을 때에는 약 75%이며, 천연기념물과 노거수까지 제외하면 약 85%에 해당된다. 민속 관련 문화재의 절대 다수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재자료는 본래 소위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과 노거수는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표 4.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

1) 국가지정문화재

분야		국가 지정			
		무형	민속	사적	천연
생업	농업				
	어업				
	상업		보부상유품		
의식주	古家		윤증선생고택 예산정동호가옥 부여민칠식가옥 부여정계채가옥 아산성준경가옥 아산외암리참판댁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서천이하복가옥 홍성조응식가옥 서산김기현가옥 홍성엄찬고택 아산건재고택	아산맹씨행단	
	織造	한산모시			
	釀造	면천두견주			
공예	목공	대목장 바디장	남은들상여		
	기타				
사회	족보				
의례	공동제의	은산별신제			
	무속				
	석불				
놀이	공동놀이	기지시줄다리기			
예능	음악	판소리			
	무용				
민속마을			아산외암마을		
기타	출토일괄		남이흥장군유품 윤증가의 유품 정충신장군유품 전박신룡장군의대 전맹고불유물		
	노거수				7건
계		7	20	1	7
		27		8	
		35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분야		도 지정				문화재자료	계
		무형	민속	유형	기념물		
생업	농업		용대기		당진합덕제		2
	어업		보령독산리독살				1
	상업						1
의식주	古家		이삼장군고택 윤황선생고택 이정우가옥 김우열가옥 전용일가옥 윤일선가옥 윤제형가옥 아산윤승구가옥 태안상옥리가영현가옥	김정희선생고택 이남규선생고택 이광임선생고택 두계 은농재	김정희선생유적 정순왕후생가	방기옥가옥 정대영가옥 박기성가옥 이한직가옥 민익현가옥 신경섭가옥 임수택가옥 편무성가옥 당진한갑동가옥	37
	織造	한산세모시 청양춘포짜기					3
	釀造	한산소곡주 계룡백일주 아산연엽주 금산인삼백주 청양구기자주					6
공예	목공	서천목공장 소목장				태안승언리상여 수덕사유물	7
	기타	지승제조 보령남포벼루 서천부채장 홍성댕댕이장 단청장 불상조각장	개태사철확 세조대왕연				8
사회	족보					홍성연산서씨석보	1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분야		도 지정				문화재자료	총계
		무형	민속	유형	기념물		
의례	공동제의	공주탄천장승제 청양정산동화제 황도붕기풍어제 금산농바우끄시기 당진안섬당제				부여저동리쌀바위	7
	무속	설위설경					1
	석불					상가리미륵불 석곡리미륵불 영인신현리미륵불 영인석물	4
놀이	공동놀이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연산백중놀이 서산박첨지놀이 내지리단잡기					5
예능	음악	산유화가 금산물페기농요 부여내포제시조 결성농요 부여용정리상여소리 공주봉현리상여소리 부여세도소리풍장					8
	무용	승무					1
민속마을							1
기타	출토일괄		초려이유태가의 유물	유형장군유물 김정희선생유물 이만유장군유물		유경종묘내유물 조익선생일괄유물	11
	노거수				7건	1건	15
계	119	33	14	7	10	20	119
		47		17			
		64					

* 총계 : 국가지정, 도 지정, 문화재자료를 합산한 수치임.

민속 관련 문화재라 하나, 동·식물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그 외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가 및 일괄유물의 지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사적으로 지정된 아산맹씨행단 외에는 고가와 일괄유물이 모두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아산맹씨행단의 경우, 고려시대에 건축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된 것일 뿐이다.[8)]

도지정문화재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은 충청남도의 상황만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가의 경우, 9채가 민속자료로 지정되고, 4채는 유형문화재, 1채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의 경우는 모두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일괄유물은 국가지정의 경우 5건 모두가 민속자료임에 반하여 도지정은 3건이 전부 유형문화재에 속한다. 사소할 수도 있으나, 문화재 지정 유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속자료의 문화재 지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한다는 사실이다.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총 74건 가운데 21건(28.4%), 전체 119건 가운데 37건(31.1%)를 차지한다. (참고로 제시한 노거수와 석불을 제외하면 각각 31.3%와 37.0%로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지정의 경우(13/35, 37.%)가 도 지정(15/64, 23.4%)보다 높은 편이어서 주목이 된다.

구체적으로 지정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노거수와 석불을 제외한 총 100건 가운데에서는 고가(37.0%)를 으뜸으로 하여, 공예(15.0%), '출토 일괄'(11.0%), 예능(9.0%), 의례(9.0%), 양조(6.0%), 민속놀이(4.0%), 생업 관련(4.0%), 직조(3.0%), 족보(1.0%), 민속마을(1.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가의 경우, 1980년 이후 집중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공예부문도 1990년대에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의 시대

8) 물론 고가 가운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은, 문화재 담당자들에게 민속자원에 대하여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별 추이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도별 현황을 살핌에 있어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의 추이에 따른 시기 구분의 필요가 있다. 우선 1961년 문화재 보호법의 시행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이어 1971년 4월의 새마을운동, 1982년 문화진흥법 개정과 그 뒤를 이은 1983년 지방문예진흥5개년계획의 시행, 그리고 1990년 문화부의 신설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9)]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1961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1971년 4월 새마을운동 시행까지 문화재의 개념을 도입하고 민속 관련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했던 제1기, 새마을운동 이후 1982년 문화진흥법 개정까지 정부와 학계에서 민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제2기, 1990년 문화부 신설까지 지방문예의 진흥에 주력했던 제3기, 1990년 문화부 신설 이후 전통문화를 문화자원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제4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시기별·분야별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10)]

시기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자료										계
	생업	의식주	공예	사회	의례	놀이	예능	마을	기타	계	생업	의식주	공예	사회	의례	놀이	예능	마을	기타	계	생업	의식주	공예	사회	의례	놀이	예능	마을	기타	계	
제1기('61~'70)		2			1		1		4	8																					8
제2기('71~'81)			1						3	4		7	2			1			3	13											17
제3기('82~'89)		11	2			1			3	17	2	9	2		2		1		2	18		8	1		4				2	15	50
제4기('90~)		2						1	3	6	1	6	6		5	2	7		6	33		1	1	1	1				1	5	44
계		15	3		1	1	1	1	13	35	3	22	10		7	3	8		11	64		9	2	1	5				3	20	119

위의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80년대의 문화재 지정 급증이다. 특

9) 각 정책 시행에 따른 문화정책의 차이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보고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백서』(1985), 『문화예술』(1989년 1·2·11·12월호) 등. 정은주는 구체적인 시기 구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각 시기별 변화를 강릉단오제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구체적인 연도별 지정현황은 부록 3. 참조.

히 1982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82~1989년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50건으로, 전체의 42.0%를 점한다. 문화재자료를 제외했을 때에도 총 100건 가운데 35건(35.0%)을 차지하는 바, 소위 비지정문화재를 1984년 5월 17일을 기하여 일괄 문화재자료로 등재한 사실조차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1992년까지의 지정 건수는 61건(51.3%)에 달한다.

1980년대는,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의 개발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재야세력이 탈춤을 비롯한 전통문화를 사회적 기호로 내건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대상들이 문화재로 재해석되면서 부각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980년대의 열기는 1990년대 중반에 주춤한 양상을 보였으나, 1996년 이후 다시 급증 추세를 이어간다. 1990~2002년 1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총 44건(40.0%)인데, 1996년 이후 6년 동안 지정된 사례가 32건(전체의 26.9%)으로 당 시기의 절대 비중(72.7%)을 점한다. 1990년대 후반 전통문화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2000년을 전후로 한 문화재 지정의 급증은 그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1982~1989년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다. 특히 고가(古家)의 비중이 월등하여, 당 시기 전체 50건 가운데 26건(52.0%), 전 시기에 걸쳐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 총 37건의 70.3%를 점하는 정도이다. 그 이전에 지정된 고가가 총 25건 가운데 5건(20.0%), 제4기에는 총 44건 중 6건(13.6%)와 비교할 때 한국건축사학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짐작케 하는 비중이다.

1979년경부터 하회와 양동 등 소위 '전통가옥밀집지역'에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된[11] 한국건축사학계의 활동은 1984년 마을 전체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 자체의 평가에 따르면, "점 단위의 문화재에서 면 단

11) 경상북도, 1979, 『良洞마을 調査報告書』; 경상북도, 1979, 『河回良洞마을 調査報告書』 등.

위의 지정으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소위 '민속마을' 지정에 제동이 걸리자, 건축사학계에서는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를 설정하는 타개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고가 이외에 특기할 만한 분야는 눈에 띠지 않는다.

넷째, 제의 등의 의례, 공동놀이가 13건(13.0%)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 분야의 민속은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타파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 이전의 의례와 놀이는 주민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민속으로, 소위 '공연형 민속'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일상생활과의 상호관련성을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소위 '미신 타파'가 강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을 통한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먼저 해방 이후 민속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흔히 1960년대는 국학(國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속 분야에 관한 관심도 증대했던 시기로 평가받는다.[12]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창설됨과 동시에 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범주에 민속자료가 포함되었으며, ③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고, ④ 1966년에 이르러 문화재관리국 소속으로 한국민속관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계의 민속조사가 본격화된 시점은 1960년대 후반기였다. 196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안동문화권학술조사를 시작으로, 1967년 전국부락제당 조사, 1968년 전국민속종합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민속학의 주도층은 관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자들이 되고, 주된 연구활동은 문화재정책과 유관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2) 인권환, 1997(1978),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그러한 가운데 1970년대 민속학계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이다. 일반적으로 한국민속학계에서는 강압적인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민속이 대거 사라졌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1960년대의 문화정책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고, 민속행사가 본격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도 오히려 1960년대 말 이후의 일이었다.[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속은 한편으로 일반인의 생활에서는 유리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보호의 우산 아래에서 '예술적 지위'를 강화하여갔다. 작금의 '전통문화의 귀족층' 출현, 그리고 '민속의 신성화' 경향은 196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 민속학은 ① 거의 정부의 문화정책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으며, ② 다수의 국문학자와 소수의 인류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내놓으면서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에 깊이 간여하게 되었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은 다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듯하다. 전 시기 고가에 치우쳤던 경향은 한층 감소하였고, 다방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는데, 다만 음악·공예·놀이·제의 등의 지정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문화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이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도 지정문화재의 급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마다 꾸준하게 도 지정문화재가 증가하였음은 분명하나, 특히 2000년(9건)과 2001년(6건)의 지정건수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 여부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 정부로서의 위상 강화 속에서 강화될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일곱째,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많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속 분야이다. 무속은 현재까지 한국 민속

13) 새마을운동과 민속 분야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으로 민속학계의 동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충청남도에서는 단 1건이 1998년에야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충청도 무속은 속칭 '독경쟁이' 또는 '법사'로 분류되는 남자 무당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계룡산은 1920년 시천교가 자리잡은 이후, 한국 신흥종교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충청남도의 무속에 대한 무관심은 이해하기 힘든 바가 있다. 최근 충청도 법사의 '앉은 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회를 빌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도안 지역은 1984년 정부가 철거를 강행하여 과거의 면모를 거의 상실한 상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과거의 자료 수집을 비롯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제2절 지정 '민속문화재' 관리현황

한편 1980년 이전 소위 '근대화'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전통 관습들을 '미신' 등의 명목으로 타파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보존되는 일부 의례나 놀이조차 관변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또한 생활의 장에서 수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과는 먼 공연예술화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다.

민속이 생활에서 분리되어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왜곡과 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주민이 아닌 직업적 공연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라 할 것이다. 과거 행사의 주체였던 사람이, 오히려 관객으로 변했다는 점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옛 민속 가운데 일부만을 독립시켜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은산별신제는 20여 개소의 모시전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의 후원에 힘입은 시장 민속이었다고 한다. 별신제는 3~4년을 주기로 음력 2월 중순을 택하여 난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난장을 벌이는 기간은 상인들의 요구에 따르며, 때로는 보름을 넘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당굿을

벌이는 느티나무가 있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장터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당시 정산-미당-은산-논치-홍산-판교-서천 또는 한산으로 이어지는 장시 가운데 은·홍산을 제일로 쳤다고 한다. 실제로 1938년의 조사자료를 통하여, 부여·서천·청양 등 3개군 장시의 거래규모는 홍산-은산-판교-서천의 순서였다.[14]

또한 해방 전후 시기 은산 별신제는 인근 미당에 거주했던 부호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별신제를 개최하기로 결정되면, 그 전 해 가을부터 은산장의 일부 주민들이 미당리로 옮겨 3개월이 넘게 유숙하면서, 의례에 필요한 일체의 용구를 제작하였다.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풍물패를 앞세워 은산장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행사를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였다고 한다.[15]

현재 저산팔읍의 모시는 '한산모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한산모시짜기는 2년 후인 1967년 은산 별신제[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와는 별도로 중요무형문화재[제14호]로 지정받게 된다. 저산팔읍 시장민속 가운데 하나로서 묶을 수 있는 전통이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은산 별신제를 백제의 패망과 연관지으면서, 장차는 전혀 별개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은산별신제의 경우,

14) 文定昌, 1941, 『朝鮮の市場』 (민속원 영인본) p.251.

場市名	소재지	開市日	거래규모(年)	場市名	소재지	開市日	거래규모(年)
扶餘	부여군 부여면 官北里	5·10	145,300	長項	서천군 장항읍 水東里	3·8	17,040
恩山	은산면 新大里	1·6	536,500	韓山	한산면 芝現里	1·6	121,450
萬壽	外山面 만수리	5·10	22,000	新場	마산면 新場里	3·8	100,120
論峙	九龍面 논치리	4·9	88,410	板橋	東面 玄岩里	5·10	400,150
鴻峙	鴻峙面 南村里	2·7	589,691	庇仁	비인면 城南里	4·9	123,465
笠浦	良化面 입포리	3·8	342,377	靑陽	청양군 청양면 邑內里	2·7	206,580
林川	임천면 郡司里	5·10	32,500	雲谷	운곡면 茅谷里	1·6	22,309
石城	석성면 석성리	2·7	44,017	定山	정산면 西亭里	5·10	40,200
舒川	서천군 서천면 郡司里	2·7	304,950	美堂	赤谷面 미당리	3·8	71,290
吉山	서천면 三山里	4·9	97,240	化城	화성면 山亭里	5·10	52, 500

15) 당시 미당장에서 지냈던 오방장승제, 그리고 내포제시조(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또한 그 부호가 지원하였다고 하나, 그 연관관계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주민들과의 면접과 과거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별신당의 탱화는 1점이 있었을 뿐이었다.[16] 그러나 지금은 산신·장수·복신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이는 별신제와 관련한 전설에 윤색이 가해진 결과이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어느 때인가 전염병이 돌았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은 백제의 장수인데, 군졸들과 함께 싸움에 져서 여기에 묻혔다. 그 뼈를 거두어 묻어주면 병마를 없애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별신굿을 시작했고, 병마가 씻은 듯이 물러났다고 전한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지으면서 복신장군과 토진대사의 요소를 삽입하였고, 토진대사란 다름 아닌 도침대사가 와전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시작하였다.

윤색에 이에 그치지 않는다. 복신장군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을 근거로 백제부흥운동과 연관되었음을 강조하고, 2002년에는 문화재연구소의 주관으로, 전쟁에서 패한 백제군 전령이 은산면 옛 장터에 서있는 느티나무[별신제 하당] 앞에 좌정한 장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백제의 옛 땅임을 부각하려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은산장터의 별신제를 백제부흥운동과 직접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원형을 재발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시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때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해석할 만한 경우도 있다. 김지영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남원 춘향제가 시기별로 변해가는 모습을 살핀 바가 있다.[17]

> 1931년 일제강점기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운명에 처한 향리 출신의 소위 '유지'들이 권번 기생들과 함께 춘향사(春香祠)를 건립하면서 새로운 의례를 시작하였다. 당시 권번 기생들은 창기(娼妓)나

16)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 편)』. 이 조사는 1967년에 진행된 것인데, 장수를 그린 탱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산신도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17) 김지영, 1998, 「남원 춘향제의 연구 : 의례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하는 김지영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작부(酌婦)와는 다르다는 차별적 이미지를 '만고 열녀 춘향'을 통하여 부각시키려고 하였고, 따라서 제관 또한 각 지방 권번의 대표급 기생들이 맡았다.

일제강점기 말에 권번이 해체되면서, 그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악원에서 제사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군의 보조 또는 상공인의 협찬에 의존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 머물렀다.

1950년 국악원을 대신하여 남원군이 의례를 주관하면서, 점차 종합 축제의 성격을 더해 갔다. 국악 공연, 춘향 선발대회, 한시 백일장, 그네뛰기, 명창대회 등이 추가되었다. 1982년에는 남원시민의 날을 춘향제례일로 정하였고, 1985년에는 남원춘향제전위원회라는 임시기구로 하여금 제전을 담당하게 하였고, 1986년에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1년 시 승격 이후 관광을 특화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춘향골'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광한루 확장 정화사업(약 6,000평에서 21,113평으로 확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춘향문화예술회관, 국립민속국악원을 비롯한 상업 및 편의시설), 춘향묘 정화사업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강릉 단오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릉 단오제의 현대적 부활과 재해석에 대해서도 정은주의 연구가 있다.[18]

강릉 단오제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김유신 장군이 모셔져 있다고 하여 신라 이래의 '천년 민속'이라고도 하고, 읍지에 고려 태조를 도왔던 왕순식의 꿈에 나타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여 대관령에 사우(祠宇)를 짓고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에 비추어 짐작하기도 한다.[19] 또한 조선조 남효온의 『추강냉화(秋江冷話)』, 허균의 『성소부부고』 등의 자료를 확대 해석하여 단오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18)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 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 『江陵誌』(경종 연간) 권2, 風俗條.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욱이 제일이 단오라는 사실조차 불명확하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의하면 1909년 일본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다만 5월 1일에서 7일까지 읍내 장터 한 구석에서 무당이 가무를 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민속학자를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강릉을 대표하는 민속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강원도에 출품할 작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서 '관노가면극'이 선택되었고, 강원도로부터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65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강릉성황신제 가면극'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되었다. 그리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강릉 단오제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4년 향토축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축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통성을 강조하거나, 강릉 고유성을 부각할 수 있고, 관객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단오제를 대표하는 관노가면극은 보존회가 결성되었고, 강릉부사가 대관령신을 맞이하러 가는 행렬[20] 및 횃불 (또는 등불) 행렬이 관객들의 볼거리로 채택되었다. 농악이나 줄다리기, 축구 정기전,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은 다른 향토축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는 이미 중단된 의례가 부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사례는 충청남도에서도 확인된다. 연산백중놀이는 1942년 이미 중단되었던 것인데, 1989년 한 향토학자가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복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종합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1년에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받았다.

재연을 위한 고증의 결과, 조선 성종 때 인물 (광산) 김국광(1415~1480)을

20) 이를 통하여 아전들의 제의였던 '강릉 단오제'가 수령이 직접 받드는 의례로 격상한 셈이 된다. [필자 주]

기리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 한다.[21] 2002년 재연 행사를 521주년이라 하는 것은 김국광이 타계한 이듬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백중날 그가 살았던 왕대리 인근 27개 동리 주민들이 그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두계천변에 난장을 트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광산 김씨들이 현 연산면 일원으로 이주하면서 연산시장과 연산천변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모든 비용은 광산 김씨 문중에서 모두 부담했으며, 1895년 제작되어 1942년 마지막 백중놀이까지 사용되었던 용기(龍旗)도 종친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민속 행사가 먼 과거에 시작되었다고 포장하는 태도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22] 연산 백중놀이의 경우, 고대적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나아가서 특정인의 사망 후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작된 전통이라고 윤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연산백중놀이에서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을 운위하는 강릉 단오제, 그리고 백제가 망할 당시 패잔병을 위안하는 의례로 시작되었다는 은산별신제보다는 그 기원을 내려잡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농사가 한가해지는 틈을 타서 장터를 배경으로, 난장을 트고 풍물을 치는 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이전으로 올려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고색창연하게 윤색한다는 '전통의 발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기원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의문점은 적지 않다. 현재 재연을 할 때, 김국광이 살았다고 하는 왕대리에 전해지는 쌍룡기에게 3개의 청룡기가 기세배를 한다. 쌍룡기란 심의서에 '1895년에 제작되었다고 하는' 용기를 말한다. 또한 왕대리를 '左相' 마을이라 하는 것은 김국광이 좌상[左議政]을 지냈기 때문이라 한다. 용기가 1895년에 제작되었다는 고증, 그리고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하여 그의 마을을 좌상 마을이라 부른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23]

---

21) 이하의 내용은 1991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조서」의 내용, 그리고 1989년 당시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부장이었던 김용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팜플렛의 내용에 의한 것이다.

22) 이에 대해서는 홉스보움의 역작을 참고할 수 있다. E. Hobsbawm, T. Ranger (eds.), 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23) 참고로 두레패 또는 마을의 가장 어른을 座上, 두레패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패를

일 잘하는 머슴을 선발하는 속칭 '장원례'의 관행은 다른 두레에서도 발견되므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효자에 대한 표창, 또는 불효자에 대한 징벌은, 동계 또는 향약의 상벌 조항을 혼동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효자에 대한 징벌로서 주리를 트는 것도 '조리돌림'의 관행을 잘못 해석한 듯하다.

기싸움이나 기세배는 통상적으로 일터로 나가던 두 두레패가 마주 쳤을 때 행해지던 것으로, 연산 백중놀이처럼 의례화된 바는 확인된 적이 없다. 또한 선생 또는 좌상 두레는, 기싸움의 승패에 따라 정해지거나, 때로는 각 마을의 위세,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큰 지주가 사는 마을을 우대하는 바에 따르는 것일 뿐,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고증대로 일반의 청룡기와 등급을 달리하는 쌍룡기가 있다면,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두레 조직이 항구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연에 있어서 놀이의 정형화된 방식은 경연대회에 출품해야 했던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놀이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김매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백중 때 백중장과 함께 벌어졌던 놀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연산 인근이 대부분 백중놀이보다 칠석놀이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칠석놀이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과연 백중놀이가 행해졌을까 하는 점은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연산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백중놀이에 참여하는 인원과 마을의 수가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연산장은 1938년 당시, 논산장이나 강경장의 $^{1}/_{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산팔읍의 은산장과 홍산장의 $^{1}/_{5}$ 규모에 불과하였다.[24] 장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연산 백중놀이의 인원과 규모는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좌상 두레 또는 선생 두레라 부른다.

24) 문정창,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p.251.

한편 최근 무형문화재 공연 추세, 그리고 문화재청의 정책에 맞추어서 연산 백중놀이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25] 2002년 8월 31일 제2회 면민체육대회와 제1회 연산 대추 이벤트 행사를 겸한 것이다. 이날은 우천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연산중학교에서 농협공판장으로 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관의 개입에 의하여 유지되고, 때로 유명세를 타는 사례도 허다하다. 논산시 노성면 주곡리 술골 마을 장승제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26] 이 마을 입구 장승은 두 번에 걸쳐 선돌로 바뀐 적이 있다.

1970년대 매년 장승을 깎는 행사가 번거롭다 하여 대신 자연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나, 이 사실을 들은 행정당국의 만류로 이듬해에 다시 목장승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장승을 대신하였으나, 다시 당국의 요청으로 1991년부터 목장승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술골 마을 입구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대상물들이 늘어서 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깎아서 세운 목장승 9쌍, 그리고 장승과 섞여서 서있는 오릿대 9쌍, 1970년대의 자연석 선돌 1쌍, 그리고 1990년에 장승을 대신하여 1번 제사상을 받았으나 지금은 장승이 쓰러지지 않게 받침대 노릇을 하는 콘코리트 선돌 1쌍이 있다.

그 밖에도 동구나무 역할을 하지만, '장승님' 옆에 있다 하여 '장승나무님'으로 모셔지는 참나무 1그루가 있으며, 장승제를 지낼 때에 깨끗이 청소하여 제물을 마련한다는 우물 1곳이 있다.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신앙대상물들이 하나의 복합체처럼 한 지점에 모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장승이 있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있는 큰 도로변에는 장승의 연원을 소개하는 안내판과 함께 장승이 서있으니,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

25)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6) 충청남도, 1999, 『문화유적분포지도(논산시 편)』.

매년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지내는 장승제를 하는데, 정월 3일부터 마을 걸립을 하면서 '집터를 누르면서' 풍장을 치고, 장승제 때에도 각 가정마다 장독대에 제물을 놓고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고, 그 규모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장승제는 행정당국과 일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외부에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 많은 관련자들이 참관하기 위한 행사로 변한 지 오래되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행정당국의 노력에 의하여 장승제가 존속되었고, 지원금 등 외부의 관심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담당기관이라 하여 변화에 참여 못할 바는 없다. 더욱이 일부 문화재, 특히 의례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형 보존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계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대공연으로 변질'되면서 '상품으로 전락한' 의례가, 오히려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목된다. 정은주는 강릉단오제 연구[28]에서, 문화재 지정 이후 기존의 요소들을 조합하고 보완하는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천년의 전통"으로 정형화시키고, "민간 주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강릉이라는 이미"[we-image]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향토색의 상품화' 또는 '고유성의 무대화'가 자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문화의 박제화'나 '가짜 문화의 창출'이라기보다, "전통성"과 "우리 것"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강조되는 새로운 전통의 발명되었다고 보았다.

---

27) 1967년 민속조사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느 장승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마을제당 -충청남도편-』.

28)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실상 전통문화의 재연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말 그대로 '원형 보존'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그에 가깝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의 관련성, 특히 정체성 확립의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런 연후에야 소위 '전통'의 자발적인 전승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농촌 지역의 주민의 상실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집단 정체성의 위기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화재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동의례가 많이 부활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이후 변화한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특히 차량의 증가에 의한 교통사고 등 빈발하는 사고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희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29] 이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지역의 의례에는 이러한 바람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문화재 담당기관의 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철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드물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연 또는 복원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공동의례를 후에는 기계적으로 풍물을 치고, 막걸리와 머리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장터에서 벌어졌던 의례와 놀이 가운데, 의례만을 독립시켜서 문화재로 지정한다. 더욱이 과거 의례 용구를 제작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옛 행사가 진행되었던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직접 참여하였던 주민들과의 면접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연을 위한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속행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구태의연함이요, 청중들에게는 식상함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기초조사의 철저함, 그리고 재연행사에서의 참신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29) 특히 거리제의 부활이 두드러진다.

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재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제3절 지정 '민속문화재' 지원현황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년 1회 공개행사비용 지원금(2002년 기준 1회 250~800만원)과 보존회 지원금(60만원)이 있고, 개인에게는 기·예능보유자(월 90만원), 보유자 후보(월 35만원), 전수교육조교(월 30만원)에 대한 활동 경비 명목의 전승지원금, 전수장학생에 대한 수강 경비 명목의 전수장학금(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과 특별장려금(15만원)이 있다.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충청남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공개행사비용 지원금과 보존회 지원금은 없다. 기·예능보유자(월 50만원)와 보유자 후보(월 20만원)에게는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지원하고 있으며,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이 외에 문화재청의 생계비 특별지원이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2000년에는 37종목 45명에게 총 1억원, 2001년에는 25종목 31명에게 9,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보유자 작품 구입비로, 2000년에 39명의 90점을 구입하는 데에 1.3억원, 2001년 29명 36점에 8,600만원이 지출되었다.

전승지원금은 원래 사회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생산품 제작이나 공연 등으로는 생계조차 잇기 어려웠던 까닭에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것이다. 지원금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 차례의 변동도 없었으며, 그나마 2000년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 내부 방침으로 지원금을 일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반발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일정액 지원 방

식을 지양하고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금액을 차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은 평균 ½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문화정책이 유지되는 한, 지정문화재는 경쟁력을 갖추어 소위 '문화재산업'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민속 관련 문화재의 경우에도 고가 보수 또는 전시관이나 전수회관 건립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다. 1993~2001년간 연도별 보수사업현황은 아래의 표 6.와 같다.

<표 6.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1994	661,384 (4.4%)	359,450 (5.9%)	160,967 (3.5%)	140,967 (4.4%)
1995	1,213,999 (11.6%)	423,520 (10.0%)	395,242 (11.1%)	395,237 (14.6%)
1996	2,068,570 (15.3%)	569,000 (12.8%)	761,785 (17.1%)	737,785 (17.0%)
1997	3,737,964 (14.4%)	1,193,816 (10.4%)	1,272,074 (16.8%)	1,272,074 (18.6%)
1998	2,457,500 (10.4%)	1,136,570 (10.2%)	660,465 (10.0%)	660,465 (11.1%)
1999	2,197,258 (6.4%)	1,188,700 (6.3%)	604,281 (6.0%)	404,277 (7.9%)
2000	2,301,087 (9.6%)	1,227,523 (8.4%)	665,497 (12.4%)	408,067 (10.3%)
2001	1,794,000 (7.6%)	1,040,000 (8.0%)	377,000 (6.8%)	377,000 (7.5%)
계	16,431,762	7,138,579	4,897,311	4,395,872

* % : 당해연도 총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위의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95~1998년 사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분야의 사업비가 축소된 결과일 뿐, 민속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다만 1997년의 경우, 금액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시관 또는 전수회관 3개소[박동진 판소리 전수회관,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회관, 외암마을 민속관 등 총 사업비 1,720,000천원]이 동시에 건립된 때문이다.

2000년의 경우, 민속 관련 문화재 총액은 감소했음에도 도비와 군비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체 금액 가운데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석장리 유

적 등 국비지원 비중이 크고 도 및 시·군비의 비중이 적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체로 전체 예산의 15%를 넘지 못한다. 이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관련시설 또는 건축물의 보수에 집중 배정되는 때문이다. 간혹 지표조사 또는 관련 계획의 수립에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는 있으나, 시설 건립이나 가옥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전시관을 건립할 때조차, 전시계획이나 관련 유물 조사 등에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현재 문화재 정비사업이란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정비를 뜻한다. 그러한 가운데 무형의 가치가 크고, 공연 등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민속 관련 자원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향은 민속 관련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무형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민속 관련 사업에서도 건축물 보수사업비가 전체 148건 가운데 95건(64.2%)을 차지한다. 민속마을 정비 역시 가옥보수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합하면 105건(70.9%)에 이르게 된다. 우선 연도별 보수사업에 투자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연도별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연도	가옥보수	전시관	민속마을 정비	기타	계
1994	7	1	1		9
1995	15	3	1	2	21
1996	12	5	2		19
1997	16	3	1	3	23
1998	12	3	1	4	20
1999	11	4	1	5	21
2000	15		2	6	23
2001	7	3	1	1	12
계	95	22	10	21	148

다만 전시관 또는 전수회관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문화재의 전시관 또는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생가터 등과 같은 관련 유적지에 건립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설령 입지 선정이 주민 민원의 차원에서 제기되고는 있으나, 외부에 널리 홍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교통상의 문제점, 특히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 된다.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면, 방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문화재 정책은 철저하리만큼 국가가 주도하였다. 민간에서는 그만한 여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다. 문화재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관련 시설의 정비에만 주력하였으므로, 독창적인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재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의무적인 공개행사일 뿐이다. 은산별신제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은산별신제 공연 및 지원금 현황>

일시	관련행사	시설보수현황
1969. 3.15.	大祭 거행 (보 40만원, 자 20만원)	
1976. 4. 5.	大祭 (군, 자)	
1977. 2.15.	小祭 (진 30만원, 자)	
1978. 3.24.	大祭 (군 100만원, 진 30만원)	
1979. 2.15.	小祭 (진 30만원, 자)	
1980. 3.20.	大祭 (국 15만원, 진 70만원, 군 150만원,자)	
1981. 2.19.	小祭 (국 50만원진 100만원,자)	
1982. 3.31.	大祭 (국 50만원,진 100만원, 군 500만원, 자 50만원)	
1983. 2.28.	小祭 (국 50만원,진 100만원,20만원, 자 75만원)	
1984. 4. 2.	大祭 (국 50만원,진100만원,군 400, 자 470만원)	
1985. 3. 5.	小祭 (국 50만원,진 100만원,군 20만원)	

일시	관련행사	시설보수현황
1986. 4.30.		地殷石造工事 (군비 300만원)
1987. 2. 9.	소祭 거행(보 40만원, 자 20만원)	
1988. 3.25.		학당굿터 포장 (군 800만원)
1988. 3.27.		별신당 지붕 수리 (군 500만원)
1988. 4. 1.	大祭(국 100만원,군 400만원, 진 100만원자 500만원)	
1989. 2.18.	小祭(국 50만원,군100만원,진 100만원,자 300만원)	
1990. 3.15.	大祭(국 150만원,군 400만원, 진50만원,자 300만원)	
1990. 9. 8.		전수회관(137평),별신당 증축(7.35평) (6억4,800만원)
1991. 3.15.	小祭(국, 군, 진)	
1991.12.30.		게시판 설치(도지원금 1천만원)
1992. 3.29.	大祭 (국 200만원, 군 500만원, 도 100만원, 진 150만원, 자500만원)	
1993. 2.12.	小祭 (국 170만원, 군 200만원, 도 50만원, 진 150만원, 자 300만원)	
1993. 9. 9.	백제문화제에서 본제와 상당굿 시연 (지원금 1,500만원, 자 3,800만원)	

* 자 : 자체 주민 부담, 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 : 문화재관리국, 군 : 부여군청,
보 : 국가보조금, 도 : 도진흥기금

이미 관련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30]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은 오로지 지원금 지급과 그에 따른 의무적인 공개행사의 개최 또는 출품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공연이나 제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능보유자들은 단순히 부수입을 얻는 기회로 여길 뿐이며, '본연의'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행사에서 외부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연출과 각본에 따라 수동적으로 '연기'를 하는 광경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30)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2).

제3장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충청남도의 민속 관련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지역적 차별성을 갖춘 충청남도 문화재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 그러한 가운데 도지정문화재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도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시 : 충청도 법사, 신도안의 종교유적 등)

► 최소한 향후라도 **최근의 문화재 지정대상의 다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활성화시켜,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하여, 전수회관 건립 등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창의적이고 참신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의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됨

제 4 장 문화재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제1절 기초조사의 필요성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다.[31] 그리고 문화복합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일부만을 독립시켜 문화재로 지정한 경우에 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다. 이점에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은산 별신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문화재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기존 조사에서의 오류는, 그대로 답습하여 정형으로 굳어지기 이전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참여관찰을 위한 장기간의 현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 단위의 적정성, 조작 여부, 고증 내용과 절차, 지정 명칭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완전한 민속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조사 기간의 확대, 다수 전문가의 참여 등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의 간단한 신청서 제출에 따라, 1~2일에 불과한 간단한 조사와 심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큰 비용이라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고학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와 발굴 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한편 철저한 기초 조사와 연구의 목적은 오류의 수정과 문화재 지정의 투명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가 자료집으로 축적된다면 문화컨텐츠

31)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2).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또한 조사·연구 과정 자체가 홍보의 일환이 되며, 그 결과물들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소개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총서로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그리고 관광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바, 신청단계의 사전조사는 후속연구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도 크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소개책자가 빈약하므로, 소개책자의 발간을 겸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미지정 자원의 발굴에서 더욱 강조된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큰 민속자원은 부지기수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잠재적 자원들을 서산시와 논산시의 사례를 통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논산시의 사례

<사례 1. 부적면 부인2리 지밭 부인당>

부적면 부인2리 '지밭' 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지내는 산제이다. 현재까지도 질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의례로 계속되고는 있으나, 주민들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시대 부인당 동쪽은 서울-호남을 잇는 역로[驛路, 호남대로]이었으며, 부인당 동북쪽 풋개다리[草浦橋]는 『춘향전』의 사설에도 등장하는 곳이다. 또한 고려조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부인처(夫人處)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부인당의 의례는, 원래 인근 여러 마을을 아우르는 지역 의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4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근동에서 가장 영험이 있었던 당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 말을 탄 행인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말을 탄 사람이 앉은뱅이가 되었다는 등의 전설도 부인당제의 권위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지금도 제물을 진설할 때는 백지에 하나하나 포장하여 올린다. 또한 원래 제사를 마친 후, 통돼지를 포함한 모든 제물은 노성천에 띄워 보냈다고 한다. 위의 사실은 『문화유적분포지도(논산시 편)』 작성을 위한 간략한 답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한다면, 이 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항목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2. 강경읍 옥녀봉 뱃고사>

강경은 조선 후기 3대 場市로 잘 알려진 곳이며, 주변 장시는 지금까지도 젓갈로 유명한 곳이다. 일제시대의 閘門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당시 건물들도 일부 남아 있다.

그런데 포구에 인접한 옥녀봉은 금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지금도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 정상에 뱃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는 바위가 있는데, 17㎝×22㎝의 크기로 '龍影臺'라는 석각이 남아 있다. 동쪽 바위의 '泡影臺'라는 음각, 그리고 작은 글씨의 한시(漢詩)도 새겨져 있어서, 옛 포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또한 옥녀봉 정상의 2그루의 느티나무는 읍의 상징물로서, 사계절의 풍광을 담은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기도 하다.

멀지 않은 지점의 황산나루에는 우암 송시열과 연관된 팔괘정(八卦亭), 그리고 사계 김장생과 연관된 임이정(臨履亭), 그리고 죽림서원 등의 유적이 전해진다. 현재 그 주변을 강경의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정비되고 있다. 강경 젓갈축제 또한 널리 알려진 향토축제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옛 강경포구 뱃고사의 고증과 재연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사례 3. 연산면 화악리 화골 칠석놀이>

화악리 화골 마을은 지금도 칠석놀이를 행한다. 1번 국도에서 하천 변 느티나무(논산 시나무 8-7-118)를 지나면, 마을 입구가 된다. 큰 도로변에서 보면 좁은 곳이지만, 막상 마을로 들어서면 넓은 골짜기가 펼쳐지는 마을이다. 이 마을 입구에 세 그루의 느티나무(논산 시나무 8-7-117)와 탑이 서 있다. 탑은 원형의 돌무더기 위에 첨형의 입석을 세워 놓은 형태이다. 이곳이 마을 주민들이 칠석놀이를 행하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느티나무에서 약 20m 정도 거리에 있는 서낭나무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음력 정월이나 10월 상달에 개인적으로 비손하기도 한다.

칠석놀이는 1960년대까지 인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농촌의 공동놀이였다. 지금도 칠석놀이를 행하는 마을은 많으나, 그 규모가 축소되고, 단지 노인들만의 간단한 잔치로 전락하면서 머지않아 전통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악리에서는 칠석놀이와 관련된 신앙대상물이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적합한 후보지라고 판단된다. 보존을 위해서는 놀이와 의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사례 4. 두마면 입암리 선바위>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자연석과 막돌로 조성한 제단이다. 마을 입구 서쪽 산자락 전체가 온통 바위로 되어 있고, 그 높이는 5m가 넘는다. 현재 공동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막돌로 조성한 제단의 폭이 5m가 넘으며,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계룡신도시를 추진중이고, 입암리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제단의 규모로 짐작컨대, 이와 관련된 사전조사가 요망되는 민속자원이다.

2) 서산시의 사례

<사례 1. 대산읍 독곶1리 황금산 풍어제>

황금산(黃金山 또는 亢金山)은 본래 독곶리 서쪽 가로림만 입구에

있었던 섬으로, 인근 바다는 '황금바다'라 일컬었던 주요 어장이었다. 이 산 정상에는 원래 돌로 둥글게 쌓은 터에 당집이 있었다고 하며, 어민들이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모시는 신은 임경업장군과 산신령, 그리고 박한량(朴閑良 또는 孔서방)이었다.

현재 황금산 당제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기록은 1927년에 간행된 『서산군지』에도 실려 있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황금바다의 황룡과 칠산바다의 백룡이 서로 싸웠는데, 백룡이 이겨서 조기떼가 칠산바다로 몰려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옛 기록에 의하면, 평신진(平薪鎭)이 항금산(亢金山) 아래에 있었고, 후에 대산목장을 관할하기도 했다 한다. 후대에 평신진이 망일산 아래로 옮겼다가, 또 다시 삼길산(三吉山) 아래로 옮겼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황금산 당제는 본래 평신진과 관련된 의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금산 남쪽 황금들 중앙의 용못[德湖, 篤湖], 황금산 서쪽 바닷가에는 동굴 두 개소, 최소한 1800년경까지 대산3리에 남아 있었던 대산목장 터, 대산리 망일사(望日寺)와 칠성단[七星坍], 화곡3리의 해월암와 삼길포 등은 모두 관련 유적이 될 것이다. 망일사 칠성단은 쇠말[鐵馬] 5필이 항상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5명의 천장(天將)이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서산군지』(1927)에 실려 있는데, 최근 사찰에서 대웅전을 개축하면서 훼손하여, 흔적조차 사라졌다.

1990년 독곶리와 황금산 사이의 갯벌을 매립하여 삼성석유화학이 입주하였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1996년 황금산사(黃金山祠)를 신축한 뒤에 임경업장군의 영정을 촬영하여 모시고 있다.

황금산 풍어제는 관련 유적과 함께 철저한 고증과 조사가 필요한 민속자원에 속한다.

<사례 2. 운산면 장승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정월 14일에 운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네 방향에서 산제사를 지내고 장승맥이를 한 뒤에 용장리

장터에 있는 느티나무[32]로 모여 중앙맥이를 했다고 한다. 동쪽으로 수당리, 서쪽으로 갈산리, 남쪽으로 용장리, 그리고 북쪽으로 여미리가 합동으로 의례를 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각 동리에서는 산제터에 올라 횃불로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산제를 시작하여 장승제를 마친 후에 용장리 느티나무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4개 마을 가운데 현재 마을제사를 지내는 곳은 수당리와 여미리인데, 특히 수당리에서는 1998년까지 거의 중단없이 마을제사를 이어오고 있다.

여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 장마철에 전라산 부근 하천에서 미륵이 발견되어, 마을로 운반하여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번거롭다는 의견을 좇아서 산제사를 중단하였는데, 1992년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삼거리의 느티나무 부근에 새로이 장승을 만들어 세우고, 미륵 옆에서 산제사를 마친 뒤에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제를 지내는 '삼거리'에 오래된 느티나무[33], 그리고 북쪽 산자락에 1675년 여미리의 전주이씨, 속칭 '예민이씨' 가문의 이택(李澤, 1651~1719)이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심었다는 비자나무(면나무 8-14-11-295)가 있다.

수당리의 장승제는 규모가 커진 사례이다. 현재 음력 정월 14일 마을 삼박산['시체산'] 중턱에서 산제를 지낸 뒤에, 이튿날 장승제로 동방맥이, 북방맥이, 중앙[바위]맥이를 지내고 있다. 중앙맥이를 지내는 암벽 주변에는 10여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고, 주민들은 제단과 함께 마을제사의 내력을 적은 비석을 세워놓고 있다. 400여 년 동안 거의 중단됨이 없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1998년에는 서산문화제에서 시연하였다.

운산면은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불과 안국사지 석불입상(安國寺址石佛立像, 보물 제100호)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여미리는 고려시대 여미현의 치소로 추정되며, 안국사지

32) 『서산군지』(1927)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용장리 느티나무는 마을[里]에서 보관(保管)하는데, 나무의 높이[樹高]는 50尺이다."

33) 『서산군지』(1927)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貞美面 余美里 느티나무는 里에서 保管하며, 추정수령은 200년이고 樹高는 80尺으로 洞口에 서있는데, 風致가 高尙하다."

부근까지 조수의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련의 유적들은 가야산 북록에 이르는 포구로서의 기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4]

<사례 3. 부석면 창리 창말 迎神堂>

부석면 창리 창말는 고려시대 화변소(禾邊所)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주사창(舟師倉)이 있었던 곳이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영신제가 행해지는데, 조선시대 주사창과 연관된 의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영신당이 위치는 주사창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이다.

신당 안에는 임경업장군 내외, 그리고 수대, 수당, 지진당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사를 모시며, 시청과 면사무소의 지원을 받는다. 영신당은 본래 1911년 선주(船主)들에 의하여 건립된 목조 초가건물이었는데, 1996년 11월 서산시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콘크리트 와가 건물로 개축하였다.

또한 창리 당산 산신당이 있어서 쇠말[鐵馬]이 진설되어 있었다고 하며, 마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는 서낭당과 장승이 있었다고 하나, 간척공사를 하면서 산 자체가 없어지고, 도로 확장공사로 장승도 폐기되었다고 한다.

창말은 간월도와 더불어 천수만의 대표적인 해변관광지이며, 안면도 개발과 더불어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간월도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허가하였으므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겨울 철새도래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간월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매년 정월 15일에 '굴부르기제'를 행하고 있으므로, 창말 영신제와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4. 해미면 장승제>

34) 용장리 2구 미럭벌과 용현리 2구 아랫강댕이 등 운산면소재지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용현계곡에 이르는 도로상에 석불이 남아 있으며, 용현계곡 곳곳에도 많은 돌미륵이 있었다고 한다.

해미읍성 주변 4마을 [반양1리 반계 마을, 산수리, 황락리, 조산리]에는 각각 미륵이 1기씩 있다. 이 미륵들은 읍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개 문을 지킨다거나, 또는 해미읍성보다 미륵이 오래되었으므로 '구해미'인 반계 마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전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미읍성의 四方裨補 돌장승'으로 보기도 한다.

반계 마을은 1491년(성종 22) 해미읍성이 신축되기 전에 해미현의 치소(治所)였던 관계로 구해미(舊海美)라고 한다.[35] 이 마을 초입 사찰에 미륵이 남아 있다. 이 사찰은 최소한 2대에 걸쳐 반계 마을의 산제와 미륵제의 祭需를 준비하던 도가집으로, 7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제기[祭器, 떡시루 등]도 남아 있다. 미륵은 본래 작은 초가집 안에 모셨으나, 일손이 달리면서 블록담을 쌓고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제일은 음력 정월 14일이며, 산제를 마친 후에 미륵제를 지냈으나, 부정이 생기면 2월 1일로 미뤄진다. 웃말과 아랫말에서 마을제사를 번갈아 맡았다. 그런데 최근 불교에 입문한 도가집 딸이, 1997년경 백제시대의 절터였다는 문화재위원의 말을 근거로 '미륵사'라는 사찰을 신축하고, 불당에 안치하였다.

조산리 미럭당에도 미륵이 있다. 도로 확장공사로 수로변으로 옮겼는데, 현재 봄·가을에는 무속인들이 모여 굿을 한다고 한다. 일락사로 향하는 도로상의 황락리 미륵의 경우 마을에 법사가 거주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산제, 칠성당제, 서낭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 해미읍성의 복원과 관련하여 축제 프로그램 등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개통된 이후 해미읍성을 찾는 내방객은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민속자원이라 할 것이다.[36]

---

35) 실제로 산제당이 있는 산에는 堂山城의 유적이 뚜렷하며, 현청터로 알려진 유적도 남아 있다.

36) 현재의 동향을 미루어 보건대, 아무런 고증도 없이 해미읍성의 비보장승이라는 일부 주민의 주장에 입각하여 관련 행사를 추진할 우려도 있다.

제2절 지정대상 다변화의 필요성

1980년경까지도 전통민속의 많은 부분이 일상에 속하였다. 농업 기계화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었고,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오일장을 출입하였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근대화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 일상에 속하는 자원들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 속하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일부 항목만을 선별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일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였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상'에 속했던 전통민속자원들이 점차 주변에서 보기 힘든 과거의 유산으로 바뀌고 있다. 비유한다면, 소를 끌면서 쟁기질하는 광경도 드물어지고, 오일장이 전국적인 관광자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문화적 변화, 특히 관광산업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마관광과 체험관광이라는 흐름은 이제 추세로 자리잡았고,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충청남도에서 2000년에 독살을 도지정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발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 생업 관련 민속자원은 다양하다. 전통 자염(煮鹽), 예덕상무사와 저산팔읍상무사, 대장간 등 농·어·상업, 수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과 관련 자료와 유물을 수집한다면, 최근 문화재청 등에서 강조하는 전통문화의 효율적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정원의 정비, 전통음식의 발굴 등 의식주 생활에 대한 관심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1983년 각 시·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수합하여 발간한 『전국민속주조사』에는 충청남도에서 조사된 민속주가 단 2사례[두견주와 소곡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반성의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종가집일 것이다. 건물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가전(家傳)되는 술과 음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조묘(不祧廟), 가묘(家廟), 족보, 관혼상제례, 나아가서 경관이 뛰어난 묘역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옛 연산 고을의 경우, 예학(禮學)의 고장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조사와 활용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반 문화와 함께 관아의 풍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관아, 특히 아전이 주도하던 풍속인 경우가 많다. 강릉 단오제, 남원 춘향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홍성의 홍가신 사당과 관련된 의례가 그에 해당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발굴된 후 공연되는 경우에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은산 별신제의 경우, 저산팔읍 장시와의 연관성, 나아가서 미당장의 장승제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의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운산면 수당리의 사례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민속신앙은 보통 놀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큰 항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거 민속신앙의 보고였던 신도안 일원의 경우, 종합적인 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신앙과 관련하여, 노거수를 문화재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농촌 곳곳의 보호수들이 대부분 목신제(木神祭)의 대상이며, 현재까지도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들은 발굴할 경우에도, 타 시·도에 앞서서 선점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대명사였던 호서사림의 전통이 퇴색하여 버린 경험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다양화되는 문화적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자원목록을 집대성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 전통민

속 자원의 경우,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문화재를 지정할 때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은 이미 강조한 바가 있거니와,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재조사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난 사건에 대한 공과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자원의 올바른 자리매김, 나아가서 은산별신제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미래의 활용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더욱 필요한 절차에 속한다.

제3절 전수교육 활성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전수교육보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두 전승의 단절을 우려한 지원 대책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창조적 계승'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인기 분야의 경우, 전수 지원생의 부족으로 단절의 우려마저 크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거니와,[37] 현재 충청남도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수교육이 활발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현재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다만 인근 노인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보존회를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현장을 방문한 길에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유자의 거주지를 물었을 때, 혼자 말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유자로 지정되어, 월 100만원씩 받으니 얼마나 좋아. 노인한테 100만원이 얼마나 큰데…" 라고 중얼거리던 내용은 현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아래 부록 5. <은산 별신제 전승 관계자 변동 현황> 참조)

37)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관련 장비를 완비하며, 전수교육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전수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하는 등의 조치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에는 각 분야에 고유한 전승상의 애로사항,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포함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와 보존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의 심층면접, 나아가서 공연행사에 대한 참여관찰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서는 문화상품으로의 개발방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관련 당사자에게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명성이 돌아온다면 청년층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38]

제4절 활용방안 다각화의 필요성

문화재보호법은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속에 있어서 원형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부터 해결하여야 할 난제가 된다.

과거의 유물만 전해지는 대부분의 문화재와는 달리, 민속은 특정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속 연행 또는 제작되고 있었고, 우연적인 시점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자체의 논리

38) 예능분야 가운데 소위 개인종목에 속하는 무용과 음악 등은 전수생과 이수자의 수는 매우 많으며, 보유자의 지위도 여타 종목보다 높아서 대학교수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 심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강정원, 2002「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참고로 이는 익년도 필자가 기본과제의 주제로 삼은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와 여건에 따라 계속 변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여, 원형 보존을 이유로, 생활을 구속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속의 원형보존은, 단지 기록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원형보존의 논리는 관련 당사자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민속 관련 문화재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자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고, 특히 민속마을과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문화재인 셈이다. 따라서 새로운 편의를 누리지 못한 채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주민들이 첨예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문화재 관리에서도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에 대한 보상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문화재 활용의 문제는 집단의 정체성, 관련 산업의 발전 또는 연관 효과 등과 연계된 사안이다. 특히 21세기의 주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민속 관련 문화재는 원형보존 문제와 배치될 가능성도 높다. 옛 모습을 고집한다면 청소년층의 흥미를 끌기 어려우며, 반대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꾼다면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재가 그렇기는 하지만 '원형보존'과 '효율적 활용' 사이의 논란은 민속 관련 문화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현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재 정책에서 점차 효율적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한옥마을의 관광호텔화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 정책의 장기적 목표가 정부 지원금의 축소 내지는 폐지이므로, 자립기반의 조성은 존립 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연관된 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은산 별신제와 한산 모시는 동일한 저산팔읍이라는 시장권에서 모시라는 특산품의 특화를 배경으로 장터에서 연행 또는 제작되었된 민속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순회 개최의 방안, 그리고 모시전의 특화 및 현대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성격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명도가 높은 서산마애불을 찾는 관광객에게, 운산 지역의 장승제를 부활시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체험하게 할 수도 있다. 홍가신 사당과 관련한 의례를 홍주읍성과 연관시키는 방안, 예를 들어 의례행렬를 성을 밟으면서 도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5월 또는 10월이라는 개최시기 등,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를 휴가철 또는 명절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휴가철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절의 경우,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라는 특성을 살려 '만남의 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문중 모임, 학교 동창회 등과 연계시켜 귀향객과 고향 친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시 고향을 떠날 때 선물을 마련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산물 장터를 함께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발굴 자원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지정 민속마을의 조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전통 생업 관련 민속자원과 관련하여, 특히 해안지역의 경우, 갯마을이라는 지명도를 이용하여 넓게 발달한 갯벌을 활용하는 문화재 정책이 가능하리라 본다. 최근 민속마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촌을 선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어촌민속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형태의 가칭 '생태민속어촌'의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화되어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하는 공예부문의 경우, 집단화를 통하여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공예 기술은 보유자의 연고지를 고집할 필요가 적은 만큼, 관광지 또는 교통 요충지에 일정 공간을 선정하여 (가칭 '충청문화타운'), 전시·홍보·공연·제작·판매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도 있다. 그러할 경우, 단절 가능성이 큰 전승 분야에 대한 관심도 유인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경연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명소로서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제5절 지역 문화재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까지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교육청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다. 문화재 정책에 관한 한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으로부터 위임되는 업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정책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립 문화재 관련 연구소의 건립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산발적으로 계획·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시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연구에서부터 수집·정리 및 전시와 활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문화재 정책은 일개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너무 벅찬 규모이다. 더욱이 최근 충청남도에서 개발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관련 유품에 대한 처리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화관광의 활성화 등, 문화재 향유기회의 증진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문화연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시책방향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제4장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충청남도의 민속 관련 문화재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 **집대성을 통하여 문화 컨텐츠 자원의 축적**을 이루고,
-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 **문화재 지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 **미발굴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 연구결과를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개서의 간행**에 이용할 수 있음

► 체험관광 등 테마를 주제로 하는 관광으로 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충청남도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집중 발굴**할 필요가 있음 (예시 : 전통 생업민속자원, 전통정원, 전통음식, 종가를 중심으로 하는 양반문화, 관아풍속)

►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정문화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연계관광의 가능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문화재 관련 **담당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방안** 강구의 필요성

►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을 통한 상품성 제고**의 필요성
- **지역축제와의 연계**와 더불어, **휴가철, 명절 때 공연하는 방식 등 운영방식의 변화** 모색
- 잠재력이 큰 자원의 경우, **비지정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
- 공예 부문의 경우, **집단화(예시 : 충남문화타운)를 통한 활로**의 모색

► 업무의 지방 위임에 대비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입안을 위한 **문화재 관련**

전담기구의 설립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전통민속 관련 문화자원의 실태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논고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잇으므로, 문화재 관련법의 제·개정 추이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속자원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전통민속자료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분석한 후에,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문화재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고, 그에 따른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각 장의 말미에 소결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① '등록문화재' 제도의 신설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②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성, ③ 문화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발굴의 필요성, ④ 문화권 개발사업 발굴의 필요성, ⑤ 문화재의 관광상품화 및 무형문화재의 지역축제와의 연계 모색의 필요성, ⑥ 외암민속마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의 필요성, ⑦ 민속관련 조사연구(민간신앙·의식주·언어전승, 민속지도 및 민속사전 편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⑧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자원의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①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에 그쳐, ②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원을 발굴·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③ 향후라도 문화재 지정대상의 다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④ 무형문화재의 경우,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⑤ 이를 위하여,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창의적이고 참신한 교

육·관광 프로그램의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집대성을 통한 문화자원의 축적을 이루며,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문화재 지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미발굴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후속작업으로서 연구결과를 일반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개서의 간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② 최근의 관광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집중 발굴할 필요가 있고, ③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가 처한 상황 및 연계관광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을 도출하고, ④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지역축제와의 연계, 비지정 자원의 관광상품화 추진, 공예부문의 집단화를 통한 활로 모색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⑤ 문화재 관련 업무의 지방 위임에 대비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입안을 위한 문화재 관련 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따라서 분야별·지역별 구체적인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화예술진흥백서』(문화재청, 1985)
『문화예술』(1989, 1·2·11·12월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조서」
『서산군지』(1927)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 편)』
경상북도, 1979, 『良洞마을 調査報告書』
경상북도, 1979, 『河回마을 調査報告書』
문정창,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민속원 영인본)
문화재청, 2002,『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인권환, 1997(1978),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충청남도, 1999, 『문화유적분포지도(논산시 편)』
충청남도,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서산시 편)』

강정원, 2002,「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김세건, 2002,「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김지영, 1998, 「남원 춘향제의 연구 : 의례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 Hobsbawm, T. Ranger (eds.), 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부 록

<부록 1. 일본 문화재보호법 약사>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전사는 18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구화와 폐불훼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태정관(太政官) 포고로 「고기구물보존방침(古器旧物保存方針)」이 포고되어, 31개 부문으로 분류된 종류를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훼손이 이어지고 국외반출까지 이루어지면서 1880~1894년 사이에 총 121,000엔의 보조금을 전국 539개 신사와 사찰에 교부하면서, 그 이자를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888년에는 궁내성에 임시전국보물취조국이 설치되어 101년간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고, 1890년 동경에 제국박물관, 1896년 제국나라박물관, 1898년 제국쿄오토박물관이 개관하였다.

1896년 청일전쟁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1897년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이 제정되어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모체가 되었다. 1911년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이 제정되고, 1920년대 후반 옛 다이묘오 가문에서 소장하던 보물의 유실을 계기로, 「고사사보존법」을 폐지하고, 한층 강화된 「국보보존법」을 제정하여 중요 유산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미지정 유산이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패전 이후 문화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1949년 법륭사 금당의 화재로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1950년에 제정된 의원입법이다. 여기서 기존의 보호대상들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총괄하였고, 문화재 보호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으며,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대상으로 삼아 발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경우를, 국보, 특별 사적, 특별 명승, 특별 천연

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등급을 매기고, 문화재보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에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권한 위임을 명시하고, 일부 기구를 통합하여 문화청을 신설하면서, 자문기관으로 문화재보호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1954년에 있었다. 이 개정안에서 문화재 관리단체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 외에 수리·공개 등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정하였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기술의 보유자를 인정하고 기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형문화재로부터 민속자료와 매장문화재를 분리 신설하였다.

1975년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속행사 또는 민속용품 등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개정을 통하여 전통적 건조물군을 문화재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개칭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지정을 인정하고, 이전의 중요민속자료를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인정하였다. 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 제도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환경을 포함한 집합체를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재와 의미를 달리한다. 그 외에 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보존 조치를 강구하여, 보존기술의 보유자 또는 단체를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문화재보호심의회를 설치하고, 비상근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개정은 1997년에 있었다. 문화재보호기획특별위원회의 1994년 보고서에 근대유산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대화 과정에서 조성된 문화유산의 보호조치가 강구되고, 지정 문화재 외에 보존 활용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였다.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하위 기관에 위임하고, 중요문화재의 공개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부록 2. 문화재청 발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중 관련 내용 요약>

2002~2011년까지 추진 사업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존관리 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핵심 6대 과제로, ① 원형보존, ② 체계적 관리, ③ 효율적 활용, ④ 과학적 조사연구, ⑤ 국제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⑥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을 선정하였다.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방지정문화재는 기본원칙과 방침 아래서 자체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원확보는 단위사업별로 예산당국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자치단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으로는,

*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해당된다.
  - 보수정비, 주변환경 보호 등 원형보존에 관한 사업
  - 관광자원화 사업과 향수권 신장 관련사업
  - 국민의 애호심 함양과 보호운동 확산
* 자체 세부시행계획은 문화재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사전 협의한다.
* 국고보조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교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문화재보존 조례를 제정한다.

1) 원형보존

유형별로 특성화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바,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는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지원을 제도화하고, 전통문화의 보급·선양과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속마을·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유산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야 보존관리가 가능하므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연한 보존관리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속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서,

① 신규종목 지정조사·발굴 : 2002~2008년 (4억원)
- 지방자치단체 추천종목의 정밀조사 실시
-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완료 및 지정 (2003년까지)
- 지역별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실시 (2003~2007년)
- 기초조사 결과 지정가치가 있는 종목 지정 추진

②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2002-2011년 (773억원)
- 생계곤란 보유자 특별지원, 보유자 작품구입 (2002년 / 3억원)
-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월정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증액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연차적으로 10% 증액 추진

③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 2002-2009년 (520억원)
- 제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5개소 건립 추진 (2002년/15.5억원)
- 매년 2개소씩 16개소 건립 지원 (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물 적극 활용)
-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실태 평가, 인센티브 부여 (2004년부터)

④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확대 : 2002-2011년 (107억원)
  - 전승지 공개행사 지원액 증액 및 지원범위 확대 (2002년/8.7억원)
  - 전승지 공개행사 정례화 및 NGO단체와 연계한 공연 적극 추진

- 재외국민의 민족정서 함양을 위한 공연 및 전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의 달(10월) 행사와 연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연 추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전통문화체험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 2002-2011년(38억원)
-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 관객 체험프로그램 위주 공연 (농악, 탈춤 등)
- 공연종목, 공연규모 연차적 확대 및 연합공연 추진
- 체험공연으로 교육효과 제고(공연감상, 공연장비·악기 체험 시연)

· 무형문화재 자매결연학교 지정 확대 : 2003-2011년(115억원)
- 각 보유단체와 자매결연학교 확대 지정 협의(2003년)
- 자매결연학교 필요 전수장비 조사 및 지원(2003년-계속)
- 전수교육관내 상설공연장 시설 건립

· 무형문화재 기업메세나 여건 조성 : 2003-2011년(공익광고비 9억원)
- 1기업 1전통문화 지원 운동 및 내고향 무형문화재 사랑운동 전개
- 무형문화재 후원운동 전개 및 후원기업 결연 추진(2003-2011년)
- 무형문화재 단체의 법인화 추진(2004-2011년)

• 남산골 한옥마을 관광호텔화 추진·운영 등

중요민속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①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 : 2002-2011년(400억원)

· 가옥보수, 편의시설 정비 등(2002년/56억원)
· 마을별 종합정비계획 수립(2002년)
· 변형 및 퇴락가옥 원형보수(2002～2011년)
· 주민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2003～2011년)
·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2004-2011년)
  - 테마관광코스 개발, 집단상가 조성, 입장료수입 주민환원 등
  - 민속관 건립,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홈 스테이(Home Stay) 활용

②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정비 : 2002-2011년(625억원)
· 연안김씨 종택 등 41건 보수정비(2002년/36억원)
· 기초조사 후 가옥별 보수정비 세부계획 수립(2002년)
  - 거주가옥 우선정비, 초가 이엉잇기, 생활불편 해소방안 등
·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정비 및 공가 활용방안 강구 (2002～2011년)

③ 비지정 전통가옥 조사 : 2002-2011년(현황조사비 20억원)
· 50년 이상 또는 그 이하일지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
· 현황 : 지방자치단체 전통가옥 1,043건 현황조사(2001년)
· 보존상태 및 문화재적 가치 조사·연구
· 시·도문화재로 지정권고

2) 체계적 관리

「문화재전문자료관」 설립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공사 기준을 정비하고,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사유권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로서, 사유지 매입 확대 등의 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3) 효율적 활용

문화재 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나,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재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정책역량 투입을 확대한다.

* 문화재를 정비하여「역사문화체험공간-관광명소-쉼터」로 연계·활용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 공연·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 관광자원화를 들 수 있는데, ① 유교문화, 가야문화, 백제문화 등 특성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품격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백제문화재현단지에 2002~2005년에 걸쳐 1,471억원(민자 1,712억원 별도)을 투자하여,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기능촌, 연구교육촌 등을 건립하게 된다.

② 전통공예품의 제작·응용 등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2003~2011년간 22억원), 그리고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2002~2011년간 46억원)을 들었다.

효율적 활용으로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2) 문화재 향유기회 확

대이다. 우선 ① 무형문화재 공연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하며 (2002~2011년간 23억원), ② 자연문화재 체험관찰시설 설치하고, ③ 청소년 문화유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2003~2011년간 8억원), ④ 문화재 전시·교육기능 강화, 그리고 ⑤ 문화재 「헤리티지 패스」 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과학적 조사연구

과학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복원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② 유적, 미술공예, 예능민속, 보존과학 등 분야별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한다. 이 가운데 유적조사에서는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능민속의 조사연구로는, ① 전통의식과 음식, 음악, 공예기술 등 전통 기·예능 분야의 현장조사 및 영상기록물을 제작하여 (2002~2007년간 30억원), 자료의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전통 기·예능총람 및 CD-ROM을 제작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상에 제공한다.

또한 ② 세시풍속, 민간신앙(전통종교, 무속신앙, 가택신앙 등), 전통 의식주 생활, 구비전승자료(설화, 민담, 전설 등) 등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연구를 실시하여 (2002~2011년간 50억원), 그 결과물들을 연차적으로 발간한다. 그 대상으로는,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발간 총 29권(1969~2000년)
- 산간신앙 조사보고서 3권 발간(1992~1999년)
- 구비전승자료 발간(1997년), 세시풍속조사보고서 4권 발간 (2001년)
- 세시풍속조사연구(2002~2003년),
  민간신앙조사연구(2003~2005년)

- 의식주조사연구(2005~2007년),
  언어전승조사연구(2007~2009년)
- 민속지도 제작 및 민속사전 편찬(2005~2011년)

마지막으로 ③ 연차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기록영화를 제작한다. (2002~2006년간 70억원)

5) 국제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가운데, 유네스코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세계유산 예비목록으로 월성 양동마을(2001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판소리가 후보목록으로(2000년) 등재되었으며, 강릉단오제, 옹기장, 처용무, 제주 칠머리당굿 연차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신청하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문화재 전문인력의 경우, 관련 학과 개설, 전문대학원 설립, 수리기능인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전통문화연수원 개설, 부설 「한국전통공예학교」설립 운영 등 한국전통문화학교와 관련된 부분만 수록하고 있다.

6) 행정지원체계강화

문화재 관리 행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 보호법령 및 규정 정비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문화재기본법」제정, 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 수리공사 등의 분리입법 추진하며,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 추진한다.(2005~2006년)

②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 및 지침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설・정비가 필요한 규정 및 지침조사를 실시하고(2001년), 세계유산등록

및 관리지침, 동산문화재 관리지침, 문화재안내판 종합관리지침 등의 제정을 추진하며(2002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지침, 문화재수리기술 지도단 구성·운영 지침 등 제정을 추진하고(2003년),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처리 규정을 제정(2004년)한다.

문화재 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또는 위임사무는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제66조)에 근거한 문화유산상을 제정·운영하는데, 2003년 4개 분야(보존전승, 학술연구, 교육홍보, 지킴이)에 걸친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문화재 행정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여, 37명으로부터 개선과제 403건을 제출받았는데,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동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1985~2000년까지 문화재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된 5,167명을 위촉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인근 주민·학교·기업 및 민간단체를 문화재 명예관리인 또는 자매결연단체로 위촉, 문화재 주민보호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부록 3.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의 연도별 현황>

연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	
	명칭	유형	분야	명칭	유형	분야	명칭	분야
1962.12. 3	錦山杏亭銀杏나무	천연	노거수					
1962.12. 3	禮山의 白松	천연	노거수					
1963. 1.21	牙山孟氏杏亶	사적	古家					
1964.12.24	판소리	무형	음악					
1965. 2.15	恩山別神祭	무형	제의					
1967. 1.16	韓山모시짜기	무형	직조					
1970.12.29	尹拯家의 遺品	민속	일괄					
1970.12.29	南以興將軍遺品	민속	일괄					
1971. 7. 9				舒川苧産八邑길쌈놀이	무형	놀이		
1973. 7.16	褓負商 遺品	민속	상업					
1973.12.24				開泰寺 鐵鐪	민속	공예		
1973.12.24				柳珩將軍 遺物	유형	일괄		
1974. 3.15	남은들 喪輿	민속	목공					
1974. 8.31				韓山 세모시짜기	무형	직조		
1976. 1. 8				金正喜先生 遺物	유형	일괄		
1976. 1. 8				金正喜先生 故宅	유형	고가		
1976. 7. 7				李南珪先生 故宅	유형	고가		
1976. 7. 7				李廣任先生 故宅	유형	고가		
1976. 7. 7				李萬囿將軍 遺物	유형	일괄		
1978. 6.21	鄭忠信將軍 遺品	민속	일괄					
1978. 3.31				牙山 蓮葉酒	무형	양조		
1978. 3.31				紙繩製造	무형	공예		
1979. 7. 3				韓山 소곡주	무형	양조		
1980. 4. 1	傳朴信龍將軍衣帶	민속	일괄					
1980.10.23				金正喜先生遺蹟	기념	고가		
1982. 6. 1	大木匠	무형	목공					
1982. 6. 1	機池市줄다리기	무형	놀이					
1982. 6. 1	沔川杜鵑酒	무형	양조					
1982. 8. 3				葛山里곰솔	기념	노거수		
1982. 8. 3				龍大旗	민속	농업		
1982.11. 4	唐津 松山面 회화나무	천연	노거수					
1982.11. 4	燕岐 鳳山洞 香나무	천연	노거수					
1982.12.31				山有花歌	무형	음악		
1984. 5.17							上加里 彌勒佛	석불
1984. 5.17							靈仁石佛	석불
1984. 5.17							兄弟松	노거수
1984. 5.17							石谷里 彌勒佛	석불

연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	
	명 칭	유형	분 야	명 칭	유형	분 야	명 칭	분 야
1984. 5.17							靈仁 신현리 彌勒佛	석불
1984. 5.17							修德寺遺物	목공
1984. 5.17							柳慶宗墓內의 遺物	일괄
1984. 1.11				草廬李惟泰家의 遺物	민속	일괄		
1984.12.24	牙山 外岩里 참판댁	민속	고가					
1984.12.24	牙山 成俊慶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扶餘 鄭啓采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扶餘 閔七植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尹拯先生古宅	민속	고가					
1984.12.24	禮山鄭東鎬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洪城 趙應植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尹潽善前大統領生家	민속	고가					
1984.12.24	舒川 李夏馥家屋	민속	고가					
1984.12.24	瑞山 金基顯家屋	민속	고가					
1985.12.31				李正雨 家屋	민속	고가		
1985.12.31							鄭大泳家屋	고가
1985.12.31							方基鈺家屋	고가
1985.12.31				田溶一 家屋	민속	고가		
1985.12.31				尹煌先生故宅	민속	고가		
1985.12.31				李森將軍故宅	민속	고가		
1985.12.31				金宇烈 家屋	민속	고가		
1986.11.19				尹日善 家屋	민속	고가		
1986.11.19				尹瑆亨 家屋	민속	고가		
1987.12.30							朴基星家屋	고가
1987.12.30				보령남포 벼루제작	무형	공예		고가
1987.12.30							片戊成家室	고가
1987.12.30							林粹澤家屋	고가
1987.12.30							申慶燮家屋	고가
1987.12.30							閔益鉉家屋	고가
1987.12.30							李漢稙家屋	고가
1988. 4.30	舒川 新松里의 곰솔	천연	노거수					
1988. 8. 1	바디匠	무형	목공					
1988. 8.30				貞純王后 生家	기념	고가		
1989. 4.20				唐津 合德堤	기념	농업		
1989.12.29				世祖大王輦	민속	목공		
1989.12.29				鷄龍 百日酒	무형	양조		
1989.12.29				公州灘川 長丞祭	무형	제의		
1989.12.29				靑陽定山 洞火祭	무형	제의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연 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문 화 재 자 료	
	명 칭	유형	분 야	명 칭	유형	분 야	명 칭	분 야
1990. 5.24							唐津韓甲東家屋	고가
1990. 5.24							泰安承彦里喪輿	목공
1990. 5.24				沔川 銀杏나무	기념	노거수		
1990. 9.27				豆溪 隱農齋	유형	고가		
1990. 5.24				舒川 大木匠	무형	목공		
1990.10.10	傳孟古佛 遺物	민속	일괄					
1990.12.31				牙山 尹勝求家屋	민속	고가		
1991. 7. 9				連山 百中놀이	무형	놀이		
1991. 7. 9				黃島 붕기 豊漁祭	무형	제의		
1992. 8.17				錦山 물페기農謠	무형	음악		
1992.12. 8				扶餘 內浦制時調	무형	음악		
1994.11. 4							趙翼先生一括遺物	일괄
1996. 2. 9	洪城 嚴燦故宅	민속	고가					
1996. 2.27				錦山 人蔘白酒	무형	양조		
1996. 2.27				小木匠	무형	목공		
1996.10.26	扶餘 內山面의 銀杏나무	천연	노거수					
1996.11.30				結城農謠	무형	음악		
1997. 8. 5							洪城連山徐氏石譜	족보
1997.12.23				公州 鳳峴里 喪輿 소리	무형	음악		
1997.12.23				扶餘 龍井里 喪輿 소리	무형	음악		
1997.12.23				舒川 부채匠	무형	공예		
1998. 1. 5	牙山健齋古宅	민속	고가					
1998. 7.25				泰安 說位說經	무형	무속		
1998.12.29				靑陽 춘포짜기	무형	직조		
2000. 1. 7	牙山 外岩마을	민속	마을					
2000. 1.11				瑞山 박첨지놀이	무형	놀이		
2000. 1.11				僧舞	무형	무용		
2000. 1.11				扶餘 世道 두레풍장	무형	음악		
2000. 1.11				내지리단잡기	무형	제의		
2000. 1.11				論山 城東銀杏나무	기념	노거수		
2000. 1.11							扶餘 저동리 쌀바위	제의
2000. 9.20				靑陽枸杞子酒	무형	양조		
2000. 9.20				錦山농바우끄시기	무형	제의		
2000. 9.20				洪城댕댕이장	무형	목공		
2000. 9.20				保寧 독산리독살	민속	어업		
2000. 12.7	천안 成歡의 향나무		노거수					

연 도	국가 지정			도지정			문 화 재 자 료	
	명 칭	유형	분 야	명 칭	유형	분 야	명칭	분 야
2001. 6.30				燕岐 양화리 銀杏나무	기념	노거수		
2001. 6.30				泰安 興住寺 銀杏나무	기념	노거수		
2001 .6.30				泰安 上玉里 가영현 家屋	민속	고가		
2001. 6.30				당진 안섬당제	무형	제의		
2001. 6.30				불상조각상	무형	공예		
2001. 6.30				단청장	무형	공예		
2002. 1.10				保寧 長峴里 歸鶴松	기념	노거수		
2002. 1.10				扶餘 수신리 盤松	기념	노거수		

<부록 4.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연도별 보수현황>

1) 1994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은농재	도지유 134	논산	○안채(1차),행랑채(2차)보수	100,000	50,000	25,000	25,000
이광명 가옥		보령	○가옥 보수	20,000		20,000	
민칠식 가옥	중민 192	부여	○별채 보수 복원	75,428	52,800	11,314	11,314
정충신장군 유품	중민 36	서산	○유품전시관,외삼문 건립 ○담장 설치	111,428	78,000	16,714	16,714
이하복 가옥	중민 197	서천	○사랑채 및 아래채 보수	37,500	26,250	5,625	5,625
외암리 참판댁	중민 195	아산	○작은댁 가묘, 담장 보수	19,428	13,600	2,914	2,914
아산 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공중화장실 개축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이준학, 김귀문,이교선)	235,600	117,800	58,900	58,900
이남규 고택	도지유 68	예산	○사랑채,대문채 보수	42,000	21,000	10,500	10,500
박기성 가옥	문자 286	예산	○사랑채 보수	20,000		10,000	10,000
계				661,384 (4.4%)	359,450 (5.9%)	160,967 (3.5%)	140,967 (4.4%)
총계				15,080,345	6,136,529	4,602,471	3,212,685

* 총계 : 당해연도 문화재 보수사업 총액

2) 1995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한갑동 가옥	문자 330	당진	○안채 보수 ○지붕 번와	10,000		5,000	5,000
안섬 붕기 풍어놀이	전통놀이	당진	○전수관 건립	200,000		100,000	100,000
남이흥장군 유품	중민21	당진	○관리사. 수종제 번와보수	32,000		16,000	16,000
정계채 가옥	중민 193	부여	○광채, 담장 보수	34,285	24,000	5,143	5,142
민칠식 가옥	중민192	부여	○연지 정비○수로 정비	71,428	50,000	10,714	10,714
민철식 가옥	민속 92	부여	○지붕 보수	47,680	47,680		
김기현 가옥	중민 199	서산	○사랑채, 담장 보수	21,428	15,000	3,214	3,214
정순왕후 생가	도지기 68	서산	○고택 단청, 협문	20,000		10,000	10,000
이하복 가옥	중민 197	서천	○광채, 안채, 사랑채, 헛청 초가 이엉 잇기	49,285	34,500	7,393	7,392
맹씨행단 보수	사적 109	아산	○문간채 보수	19,285	13,500	2,893	2,892
윤보선 생가	중민 196	아산	○안채, 사랑채 보수	42,857	30,000	6,429	6,428
외암마을 정비	건전보 2	아산	○가옥 보수	229,680	114,840	57,420	57,420
윤승구 가옥	도지민15	아산	○사랑채 보수	40,000	20,000	10,000	10,000
윤제형 가옥	도지민 13	아산	○아래채 보수	40,000	20,000	10,000	10,000
이광임 고택	도지유 83	예산	○담장 설치	23,000		11,500	11,500
상무사	중민 30	예산	○전시관 보수	5,000		2,500	2,500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방기옥 가옥	문자 279	청양	○안채 보수	28,000	14,000	7,000	7,000
승언리상여보호각	문자315	태안	○보호각 정비	31,500		15,750	15,750
조응식 가옥	중민 198	홍성	○문간채, 연목 이상 해체 보수	28,571	20,000	4,286	4,285
전용일 가옥	도지민 11	홍성	○안채 보수	40,000	20,000	10,000	10,000
결성농요 전수관	전통 농요	홍성	○전수관 건립	200,000		100,000	100,000
계				1,213,999	423,520	395,242	395,237
				(11.6%)	(10.0%)	(11.1%)	(14.6%)
총계				10,506,937	4,230,988	3,570,684	2,705,266

3) 1996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은농재	도지유 134	계룡	○서재 보수	48,000	24,000	24,000	
민속극박물관	비지정	공주	○농기구 자료관 건립 등	200,000		100,000	100,000
판소리전수관	비지정	공주	○토지 매입	200,000		100,000	100,000
판소리전수관	비지정	공주	○전수관 건립	200,000		100,000	100,000
남이홍장군 유물관	중민 21	당진	○전시관 건립	221,428	155,000	33,214	33,214
한갑동 가옥	문자 330	당진	○안채 보수	24,000		12,000	12,000
이현구 가옥	문자 288	보령	○안채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김기현 가옥	중민 199	서산	○부엌덧칸, 담장 보수	21,428	15,000	3,214	3,214
한산모시짜기전수관	무형 1	서천	○시설 보강	100,000		50,000	50,000
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초가잇기○가옥 보수(4건)	210,000	105,000	52,500	52,500
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민속관 부지 토지 매입	300,000		150,000	150,000
외암리 참판댁	중민 195	아산	○안채 보수	85,714	60,000	12,857	12,857
윤승구 가옥	지민 15	아산	○별채 보수	70,000	35,000	17,500	17,500
윤제형 가옥	지민 13	아산	○안채 보수	48,000	24,000	12,000	12,000
맹씨행단	사적 109	아산	○토지 매입 ○지표조사	50,000		25,000	25,000
김정희 고택	도지유 43	예산	○사랑채 보수	80,000	40,000	20,000	20,000
방기옥 가옥	문자 279	청양	○안채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전용일 가옥	지민 11	홍성	○안채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조응식 가옥	중민 198	홍성	○문간채, 담장	30,000	21,000	4,500	4,500
계				2,068,570	569,000	761,785	737,785
				(15.3%)	(12.8%)	(17.1%)	(17.0%)
총계				13,556,652	4,742,080	4,462,618	4,351,954

4) 1997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은농재	유형 134	계룡	○동재 개축○담장 신축	200,000	100,000	50,000	50,000
박동진 전수관		공주	○전수관 건립	600,000		300,000	300,000
윤황 고택	민속 8	논산	○안채, 협문 보수	90,000	45,000	22,500	22,500
이삼 고택		논산	○문간채 개축○담장 보수	88,000		44,000	44,000
윤증 고택	중민 22	논산	○담장 설치	50,000		25,000	25,000
윤증 고택	중민 23	논산		18,108	12,676	2,716	2,716
합덕제	기념물 70	당진	○제방보수	200,000		100,000	100,000
합덕제	기념물 70	당진	○제방 보수	200,000		100,000	100,000
편무성 가옥	문자 304	보령	○가옥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이정우 가옥	민속 9	부여	○가옥 보수	106,800	53,400	26,700	26,700
김기현 가옥	중민 199	서산	○안채, 헛간 보수	50,000	35,000	7,500	7,500
저산팔읍 길쌈놀이	유형 134	서천	○전수관 건립	400,000	200,000	100,000	100,000
맹씨행단	사적 109	아산	○토지 매입○계단 설치	71,428	50,000	10,714	10,714
외암리 참판댁	중민 159	아산	○사랑채, 문간채, 곳간채 보수	158,400	110,880	23,760	23,760
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민속관 건립○주차장 조성 ○민가 보수	720,000	360,000	180,000	180,000
외암마을		아산	○민속관 건립	200,000		100,000	100,000
윤보선 생가	중민 196	아산	○행랑채 보수	65,314	45,720	9,797	9,797
성준경 가옥	중민 194	아산	○안채, 문간채 보수	64,000	44,800	9,600	9,600
윤제형 가옥	민속 13	아산	○광채 보수, 담장 보수	49,000	24,500	12,250	12,250
맹씨행단		아산	○관리사,담장,배수로,개울 정비	200,000		100,000	100,000
남은들 상여	중민 31	예산	○보호각 보수	15,000	10,500	2,250	2,250
이남규 고택	유형 68	예산	○순국비 건립	30,000		15,000	15,000
조응식 가옥	중민 198	홍성	○사랑채, 헛간채 보수	101,914	71,340	15,287	15,287
계				3,737,964 (14.4%)	1,193,816 (10.4%)	1,272,074 (16.8%)	1,272,074 (18.6%)
총계				25,905,991	11,499,084	7,570,536	6,836,372

5) 1998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박동진판소리	중무 5	공주	○생활관 자료실 건립	300,000	150,000	75,000	75,000
이삼 고택	지민 55	논산	○사랑채 보수	94,500	47,250	23,625	23,625
한갑동 가옥	문자 330	당진	○사랑채,안채 보수	54,000	27,000	13,500	13,500
합덕제	지기 70	당진	○제방 보수	200,000		100,000	100,000
신경섭 가옥	문자 291	보령	○사랑채 보수	105,000	52,500	26,250	26,250
이정우 가옥	지민 9	부여	○가옥 보수	90,000	45,000	22,500	22,500
저산팔읍 길쌈놀이	지무 13	서천	○담장, 전시시설 설치	200,000	100,000	50,000	50,000
아산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민가 보수 ○주차장 설치 ○민속품 보수	510,000	255,000	127,500	127,500
외암리 참판댁	중민 195	아산	○문간채, 담장 보수	89,100	62,370	13,365	13,365
윤승구 가옥	지민 15	아산	○광채,담장 보수	138,900	69,450	34,725	34,725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이광임 고택	지유 83	예산	○안채 번와 보수	70,000	35,000	17,500	17,500
이남규 고택	유형 68	예산	○고택 안채 보수	40,000		20,000	20,000
방기옥 가옥	문자 279	청양	○사랑채, 행랑채 보수	80,000	40,000	20,000	20,000
방기옥 가옥	문자 279	청양	○대문, 협문 보수	20,000		10,000	10,000
상옥최씨댁	전건 4	태안	○문간채 보수	66,000	33,000	16,500	16,500
승언리 상여	문자 315	태안	○진입로 정비	20,000	10,000	5,000	5,000
황도 붕기 풍어제	지기 70	태안	○당집, 산신각, 육간 보수	50,000		25,000	25,000
엄찬 고택	중민 231	홍성	○본채 보수	300,000	210,000	45,000	45,000
연산서씨 석보		홍성	○진입로 정비	10,000		5,000	5,000
결성농요 전수관		홍성	○토지 매입	20,000		10,000	10,000
계				2,457,500 (10.4%)	1,136,570 (10.2%)	660,465 (10.0%)	660,465 (11.1%)
총계				23,633,472	11,098,176	6,575,007	5,960,289

6) 1999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이유태 유물	민자 5	공주	○숭의사 기와 보수	20,000	10,000	10,000	
곰사당		공주	○웅진당 보수	20,000	10,000	10,000	
계룡산 산신제		공주		25,000	10,000	15,000	
이삼장군 고택	지민 7	논산	○안채, 사랑채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갈산리 곰솔	지기 27	논산	○외과수술 등	20,000	10,000		10,000
남이홍장군 유품	중민 221	당진	○유물전시관 시설	71,429	50,000	10,715	10,714
합덕제	기념물 7	당진	○합덕제 복원	50,000	25,000	25,000	
정경채 가옥	중민 193	부여	○담장, 화장실 보수	71,429	50,000	10,715	10,714
은산 별신제	중무 9	부여	○교육관시설 보수	66,000	33,000	16,500	16,500
내포제시조전시관		부여		200,000	100,000	100,000	
정순왕후 생가	도지기 68	서산	○생가지붕 보수	30,000	15,000	15,000	
이하복 가옥	중민 197	서천	○석축 및 계단 보수	40,000	28,000	6,000	6,000
성준경 가옥	중민 194	아산	○사랑채 보수 12평	77,143	54,000	11,572	11,571
외암리마을	전건 2	아산	○변형가옥,초가 보수 ○초가 이엉잇기 34동	994,400	497,200	248,600	248,600
건재고택	중민 233	아산	○안채,광채 보수	135,714	95,000	20,357	20,357
윤일선 가옥	지민 12	아산	○대문채, 담장 보수	64,000	32,000	16,000	16,000
윤승구 가옥	지민 15	아산	○담장 보수	52,000	26,000	13,000	13,000
이준경 가옥	중민 233	아산	○모정, 후원, 우물 보수	20,000	10,000	10,000	
붕기풍어제	도지무 1	태안	○제기고 정비	50,000	25,000	25,000	
조응식 가옥	중민 98	홍성	○부경, 광채 보수	67,143	47,000	10,072	10,071
전용일 가옥	지민 11	홍성	○문간채 보수	63,000	31,500	15,750	15,750
계				2,197,258 (6.4%)	1,188,700 (6.3%)	604,281 (6.0%)	404,277 (7.9%)
총계				34,211,770	18,997,300	10,082,185	5,132,285

7) 2000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윤증선생 고택	중민 190	논산	○사랑채, 석축, 담장 보수	71,428	50,000	10,714	10,714
송불암미륵불	도문자 83	논산	○법당 보수	200,000	100,000	50,000	50,000
이삼장군 고택	도민자 7	논산	○안채 보수	40,000	20,000	20,000	
기지시 줄다리기	중무 75	당진	○행사장 정비, 당집 개축	80,000	40,000	40,000	
신경섭 전통가옥		보령		20,128	10,064	5,032	5,032
두계 은농재	도지유 134	본청	○외곽 부속건물	120,000	60,000	60,000	
정계채 가옥	중민 193	부여	○안채, 사랑채	6,580	4,606	987	987
저동쌀바위	도문자 731	부여	○화장실 개축	40,000	20,000	20,000	
정순왕후 생가	도지기 68	서산	○지붕 및 기단, 굴뚝 보수	100,000	50,000	50,000	
이하복 사옥	중민 197	서천	○안채, 문간채, 사랑채	7,520	5,264	1,128	1,128
건재고택	중민 233	아산	○문간채, 곳간, 사당, 행랑 보수	214,285	150,000	32,143	32,142
외암마을	전건보 2	아산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용역 ○초가이엉 잇기	800,000	400,000	200,000	200,000
윤일선 가옥	도민자 12	아산	○사랑채, 문간채, 담장, 협문	200,000	100,000	50,000	50,000
윤제형 가옥	도민자 13	아산	○협문 및 담장 보수	30,000	15,000	7,500	7,500
외암민속마을		아산		32,528	32,528		
이남규 고택	도지유 68	예산	○사랑채 지붕 보수	40,000	20,000	10,000	10,000
정대영 가옥	도문자 285	예산	○안채 보수	100,000	50,000	25,000	25,000
정동호 가옥	중민 191	예산	○안채, 사랑채, 행랑채	3,760	2,632	564	564
이광임 고택	도지유 83	예산	○안채, 사랑채 보수	60,000	30,000	30,000	
남은들 상여		예산	○상여보호각 보수	24,858	12,429	12,429	
승언리 상여	도문자 315	태안	○보호각 단청	20,000	10,000	10,000	
황도붕기풍어제	도무형 12	태안	○담장 설치	30,000	15,000	15,000	
전용일 가옥	도민자 11	홍성	○담장 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계				2,301,087 (9.6%)	1,227,523 (8.4%)	665,497 (12.4%)	408,067 (10.3%)
총계				23,959,605	14,629,805	5,372,765	3,957,035

8) 2001년 (단위 : 천원)

유적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윤증선생 고택	중민 190	논산	○안채, 사랑채, 번와 보수	140,000	98,000	21,000	21,000
임수택 가옥	문자 292	논산	○안채 보수	84,000		42,000	42,000
남이흥장군 유품	중민 21	당진	○충장사 및 유물관 보수	50,000		25,000	25,000
한갑동 가옥	문자 330	당진	○기단 보수	10,000		5,000	5,000
김기현 가옥	중민 199	서산	○안채,행랑채,사랑채 보수	140,000	98,000	21,000	21,000
맹씨행단	사적 109	아산	○유물관 보수	70,000	49,000	10,500	10,500
외암마을	중민 36	아산	○민가 보수	1,000,000	700,000	150,000	150,000
아산 윤일선 가옥	지민 12	아산	○부속채 및 담장 보수	120,000	60,000	30,000	30,000
김정희 고택	도지유 43	예산	○안채, 사랑채, 사당 번와	60,000		30,000	30,000
방기옥 가옥	문자 279	청양	○담장 보수	50,000		25,000	25,000
승언리상여보호각	문자 315	태안	○보호책 설치	20,000		10,000	10,000
보부상 유품	중민 30	홍성	○유물보관장소 설치	50,000	35,000	7,500	7,500
계				1,794,000 (7.6%)	1,040,000 (8.0%)	377,000 (6.8%)	377,000 (7.5%)
총계				23,569,000	13,023,100	5,532,450	5,013,450

<부록 5. 은산별신제 전승관계자 변동현황>

일시	관련 사건	관련인물 동향
1966. 2.15.	무형문화재 지정 (제9호)	보유자 인정 (유상영,백남용,이어린년)
1975. 1.20.		전수생 선정 (나삼봉,차진용,최매순)
1978. 4.10.		전수생 선정 (송병일-별좌)
1980.12.31		이수자 인정 (나삼복,차진용,최매순)
1981. 3. 1.		전수자 선정 (윤일중,전명종,박창규)
1981. 4. 1.		전수생 선정 (김인만,최병윤)
1982. 4. 1.		이수자 조교 지정 (나삼복)
1982. 9. 1.		보유자 후보 인정 (나삼복, 87-6호)
1983. 3. 1.		전수생 선정 (이은제,정세택,이영섭,서기성)
1983. 7. 1.		송병일 이수자 수여(299호)
1984. 1. 1.		전수생 선정 (우종실-악사, 한시우-무녀)
1985. 7. 1.		이수자 조교 지정 (송병일, 87-14호)
1986. 4. 1.		최명윤(451호), 김인만(452호) 이수증 수여
1986. 4. 6.		기능보유자 이어린년 별세
1986. 7. 1.		황인용,황남희 이수생 선정, 윤일중(715호)전명종(716호),박창규(717호)이수증 수여
1986.11. 1.	보유단체 인정(제322호)	
1987. 1. 5.		車鎭龍(대장) 보유자(360호) 인정,석동석(화주) 보유자 후보 인정(87-50호)
1988. 7.31.		백춘식(821호),이은제(822호),박노진(823호),정세택(824호),이영섭9825호),서기성(826호),서달용(827호),정진해(829호),신창국(829호) 등 이수증 수여
1989. 3.26.		기능보유자 백남용(대장) 별세
1989. 6.15.		한시우(906호),우종실(907호) 이수증 수여
1989. 9.13.		이수자 백춘식 별세
1990. 5. 8.		석동서 기능보유자(화주) 인정(407호)
1990. 7. 1.		이해승,유현식,변용태 전수생 선정
1990.10.10.		전명종(대장) 조교 선정(129호)
1991. 7. 1.		황인용(1029H),황남희(1030호) 이수증 수여
1991. 9.27.		기능보유자 후보 나삼복(화주) 별세
1991.10. 1.		일반 전수생으로 선정 (한경희,유동옥,조복만,차광은,이일구)
1992. 1. 7.		은산별신제보존회장 박창규 인정
1992. 3.12.		이수자 서달용(827호) 별세
1992. 7. 1.		황님희(183호) 무녀 조교 인정
1992.12. 5.		기능보유자 유상열(대장) 별세
1993. 2.13.		이수자 신창국(악사) 별세

■ 집 필 자 ■

오 석 민(吳碩珉)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문학 석사(민속학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2-08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 현황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903 팩스 : (042)841-9905
인 쇄 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2-2 03910 <비 매 품>